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2020. 1.



인사혁신처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심사 관련 문의처**

- ▶ 공직윤리(PETi)시스템 접속 및 시스템 종합 문의 : 서비스데스크(1522-4273)
- ▶ 재산등록·공개 문의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과)
- ▶ 재산심사 문의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재산심사과)
- ▶ 주식백지신탁 문의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관련 문의 : 소속 기관 정보담당부서
- ▶ 기타 사용문의 및 질의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게시판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 목 차 /

I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_____	1
II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_____	5
1	본인정보 입력	-----	6
2	친족정보 입력	-----	6
3	총괄표 작성	-----	7
	1. 부동산(토지·건물)	_7	
	2. 부동산 규정 준용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_10	
	3. 현금	_11	
	4. 예금	_11	
	5.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_12	
	6. 증권	_12	
	7. 채권(사인간 채권)	_16	
	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_16	
	9. 금 및 백금	_17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_17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 목 차 /

- 11. 회원권 _17
- 12. 지식재산권 _18
-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_18
- 14.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_18

4 변동요약서 작성	-----	19
5 공개목록 작성	-----	20
6 신고서 제출	-----	20

III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Q&A	-----	23
-----------------------------	-------	----

IV 공직자 재산신고 주요 실수사례	-----	28
----------------------------	-------	----

V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	29
-----------------------------------	-------	----

I 20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신고기준일('19.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 신고기준일 : '19.12.31.

▶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9.12.31.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신고대상

▶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 신고재산의 종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전세권

▶ 자동차·선박, 광업권·어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국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사인간 채권), 채무(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20. 1. 1.(수) ~ 3. 2.(월) 24:00까지

▶ ① 부동산정보 열람 : '20. 1. 16.(목)~ ② 금융정보 사전검증 : '20. 1. 16.(목) ~ 21.(화)

③ 금융정보 활용입력 : '20. 1. 22.(수)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PETI)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휴대폰과 주민번호가 등록된 경우 SMS인증(주민등록증 발급일자 필요)을 통한 로그인 가능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유의사항

- ▶ (신고기준일) 반드시 '19.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20.1월~2월) 당시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 (신고대상 재산) 실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이 아니더라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사실상 소유 재산** 모두 신고
 - 예금, 증권 및 채무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가족사이의 사인간 채권·채무 등도 모두 신고
- ▶ (정보활용 입력)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본인 및 친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 확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 (신고유의사항 확인) 전년도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유의사항 (의무자 알림 메모) 팝업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

■ 기타 관련제도

- ▶ (정보제공) 등록의무자 편의를 위해 등록대상 친족의 서명을 받아 '19.11.30.까지 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 정보 및 계좌별 잔액정보 등 제공
 - ※ 제출된 동의서는 철회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함
- ▶ (고지거부) 직계존비속 중 독립생계·타인부양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해당 재산을 고지거부 할 수 있음

구분	신규허가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로 친족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 대상자 ▶ 기존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가 됐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이 '20.12.30.로 만료 예정인 대상자
신청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 ~ 3.2.

- ▶ (주식백지신탁) 공개대상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함
 - ※ 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하여 '관련없음' 결정받은 경우는 보유 가능

참고 1 | 고지거부 심사기준

고지거부 심사기준

대 상	심 사 기 준	
직 계 존 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직 계 비 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면 허가

▶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 지역	2019년	1,024	1,743	2,256	2,768	3,280	3,792	4,304
	2020년	1,054	1,795	2,322	2,849	3,376	3,904	4,433
농촌 지역	2019년	706	1,202	1,556	1,909	2,263	2,616	2,969
	2020년	738	1,257	1,625	1,994	2,363	2,733	3,103

※ 고지거부 신규 신청자는 2019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재심사 신청 대상자는 2020년 소득기준을 적용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 환산 ha→㎡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만5천㎡ 미만	1만5천-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10만㎡ 미만	10만㎡ 이상
월 소득	2019년	188	562	893	986	1,529	1,953	2,581	3,822	3,485
	2020년	250	588	902	1,688	2,042	3,011	2,851	4,353	7,221

■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p>일반소득</p>	<p>〈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자경증명(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농지원부, 출하증명 등 <p>〈사업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p>〈근로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p>〈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p>〈금융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임대소득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국세청)
<p>재산소득</p>	<p>〈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p>〈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p>기타</p>	<p>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p>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 사이트(www.gov.kr)

- 정부24(민원24) :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 제공 사이트(www.realtyprice.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II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작성 순서	신고 항목	주요 신고 내용
1 본인정보 입력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신고기준일('19.12.31.) 현재 상태로 수정
2 친족정보 입력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 신고기준일 현재 친족정보 작성 ※ 혼인(신고)한 딸, 사망한 직계존비속,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등록제외
3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건물)	▶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신고 ▶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으로 신고 ※ 평가액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활용 또는 부동산 소재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 ▶ 타인건물에 대한 임차권(전세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 임차보증금 기입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 자동차는 매매 시 실거래가격, 계속 보유시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등으로 신고
	- 광업권·어업권 등	▶ 매매 시 실거래가격, 계속 보유시 시가표준액 등 평가액으로 신고
	- 현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예금(보험)·유가증권·사인간 채권·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 항목에,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건물임대 채무에 신고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정치자금용 예금계좌의 예금을 보유하여 신고 시 해당 항목에만 신고하고 '예금' 항목에는 미신고
	- 금·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登記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 란에 면적 기재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신고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 매출액 등 기재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출연금액,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등) 등 기재
4 변동요약서 작성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 소득과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세전)소득금액 기재
5 공개목록 작성	- 재산공개자만 작성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 ▶ 건물인 경우 종류 및 용도(주택, 아파트, 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호수 기재 생략
6 신고서 제출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재산변동신고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1 본인정보 입력

- ▶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19.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 전입·전출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 ▶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 주소지 관리형태는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2 친족정보 입력

- ▶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소, 직업 등을 등록기준일 현재의 상태로 입력
 - 친족의 직업은 재산의 증감액과 함께 재산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급적 상세하게 입력하여 향후 불필요한 소명 방지
- ▶ 주소지 관리형태는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 특히, 해외 거주 친족의 자가, 기숙사, 렌탈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주지 정보를 반영하고 부동산 등록 시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 친족은 **혈족 개념**이 적용되며, 배우자(고지거부 불가능)의 재산은 법률상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등록**
 - 양부모, 양자녀,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이 아님
- ▶ 이미 등록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이나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등록제외’란에 체크
 - 결혼한 딸이 이혼한 경우 등록대상자로 등록(외손자녀는 등록하지 않음)
- ▶ **고지거부 상태**(허가기간, 허가여부)를 **확인**하여 고지거부 대상이 아닌 친족의 재산은 반드시 신고

3 총괄표 작성

1. 부동산(토지, 건물)

1) 소유권

- ▶ 부동산의 가액과 소유(권리)자, 권리종류(소유권), 소재지, 면적, 지목·종류 및 용도 등 기타 권리명세를 신고
 - 매입 부동산은 중도금 지급 이후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변동사유' 란에 자금출처 등 사실관계 기재
 - 등기 이전이 안 된 상속 받은 부동산은 '사실상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사실관계 기재
- ▶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고,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분리하여 신고(예) 대지 〇〇㎡, 건물 〇〇㎡
 - ※ 아파트의 경우 건물면적(전용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상가, 빌딩, 오피스텔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건물은 연면적(전용+공용면적)을 기재
- ▶ 공동소유 부동산은 '면적'과 '가액' 모두 소유 지분만큼 신고(예) 〇〇㎡ 중 〇〇㎡)
- ▶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은 관리형태를 '변동사유' 란에 반드시 기재
 - 예) 등록의무자의 주소지, 〇〇〇에게 임대, 공실로 관리 등
- ▶ 가액은 신규취득한 부동산과 종전에 신고한 부동산을 구분하여 신고
 - 신규 취득한 부동산 :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으로 신고(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활용)
 - 기존 신고한 부동산 : ① 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과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② 종전신고 시 평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최근 평가액으로 신고

| 용어 정리 |

- ▶ 가 액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의 가치로,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함 (전체 재산 총계에 반영되는 금액)
- ▶ 평 가 액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상 공시지가·공시가격 및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 실거래가격 : 실제 거래 시 지급·수취한 금액, 취득가격 ※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님

■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 (토지+건물 일괄공시) 아래 평가액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산되어 있음

주택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개인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다세대주택		
▶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 공시가격이 있는 일부 상가·빌딩·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국세청 기준시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주소 검색]

▶ (토지/건물 별도공시) 토지 또는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 아래 평가액으로 산정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공시가격 없는 건물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서울 소재 - “이택스” 홈페이지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 외 소재 - “위택스” 홈페이지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 무허가 건물, 소규모 상가, 빌딩, 오피스텔 등 대지·건물 가액이 합산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가액(개별공시지가)과 건물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신고

2) 전세권(임차권)

- ▶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토지 등은 임차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등록재산이 아님
 - 공무원·군인 임대아파트 등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관사도 해당 보증금을 전세권 항목으로 신고

3) 분양권

- ▶ 일반 분양아파트는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
 - 분양권 신고 후 무이자 중도금 납입 시 누락 주의
- ▶ 재건축 분양아파트는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 (=보상가액)과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건물’항목에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이주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항목에 신고
 -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가액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관련 용어 (예시)

(단위: 천원)

권리가액	부담금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340,000	40,000	380,000	480,000

- ① 권리가액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 개발이익(비례율) (=보상가액, 지분금액, 자산가치)
- ② 부담금 : 착공 시 건설사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③ 조합원 분양가 : 재건축 아파트 원소유자가 분양받을 경우 부담하는 금액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추가 보상금 발생,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부담금 발생)
- ④ 이주비용 : 완공 때까지 조합원의 생활유지 등을 위해 빌려주는 자금

4) 기타

- ▶ 주택연금과 관련한 담보 주택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계속해서 신고하되, 등록기준일 시점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은 '채무'항목에 별도 신고
- ▶ 신축 중인 건물은 '사실상 소유권'으로 신고하되, 가액은 등록기준일 시점까지 소요된 건축비로 신고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1)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
 - ※ 배기량이 없는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의 경우 배기량에 0cc기재
- ▶ 자동차 가액은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계속 보유 시 재산등록기준일 현재 자동차보험 상 차량기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순으로 신고
 -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항목에 신고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 **운용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자동차 반납 (≒렌터카)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란에 신고하되, 렌터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
 - ▶ **금융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할부구매)
 -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하되, 채권의 '변동사유'란에 리스 관련 사실관계 기재
 - ※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처리
- ▶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계속 보유 시 평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

2) 광업권·어업권 등

- ▶ 광업권·어업권에 대해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신고
- ▶ 광업권·어업권 등의 가액은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계속 보유 시 평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

3. 현금(수표 포함)

- ▶ 보유하고 있는 지폐 및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 보관방법(금고, 옷장 등), 보관사유, 용도, 자금출처 등 기재

4.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 보험, 수익증권, 펀드 등도 '예금' 항목에 포함, 보험약관대출은 채무항목에 신고
 - ◆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도 예금 항목에 반드시 신고
- ▶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문중재산 등은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 후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신고 시 '예금' 항목에 해당 예금계좌를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 보험은 100% 보장성 보험(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 예-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계약자 명의로 신고하고 가액은 납입 보험료 총액으로 신고
- ▶ 수익증권(펀드 등)의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

- ◆ 계좌번호가 없는 사모펀드의 경우 '계좌번호'란에 '-' 기재

- ▶ 마이너스 통장은 등록기준일 잔액이 ⊕면 '예금', ⊖면 '채무' 항목에 신고

- ▶ 부동산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건물항목에 종전 부동산을 신고하고, 신탁등기 이후에는 종전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 처리하고 신탁회사의 평가금액을 예금(부동산 신탁회사 회신금액)으로 신고
- ▶ 연금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등록대상 재산 아님

5.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CD, 보험, 수익증권(펀드 등), 투자자예탁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 ▶ 재산등록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등록하고 ‘변동사유’ 란에 해당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기입

6. 증권(주식·국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신고 시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은 상장주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채권 등은 직접 입력 필요

- ▶ 증권의 종류(주식, 국채 등), 발행인(종목명), 종목코드(상장주식의 경우 반드시 기재), 수량, 가액 등 보유 증권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재
- ▶ 증권 중 국채·공채·회사채는 액면가로 신고하고,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 최종거래가격으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
 -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 중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
 - 상장폐지된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액면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 K-OTC 시장 개요

-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홈페이지(<http://k-otc.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이며, 받을 주식의 종류, 행사 조건, 현재시가 등 입력
 - ◆ 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이면 등록기준일 현재 시가를, 비상장주식이면 액면가를 가액으로 산정
-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 본인(재산공개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체가 보유한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 (재산신고 대상과 주식백지신탁 대상 다름)
-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첨부

참고 2 | 주식백지신탁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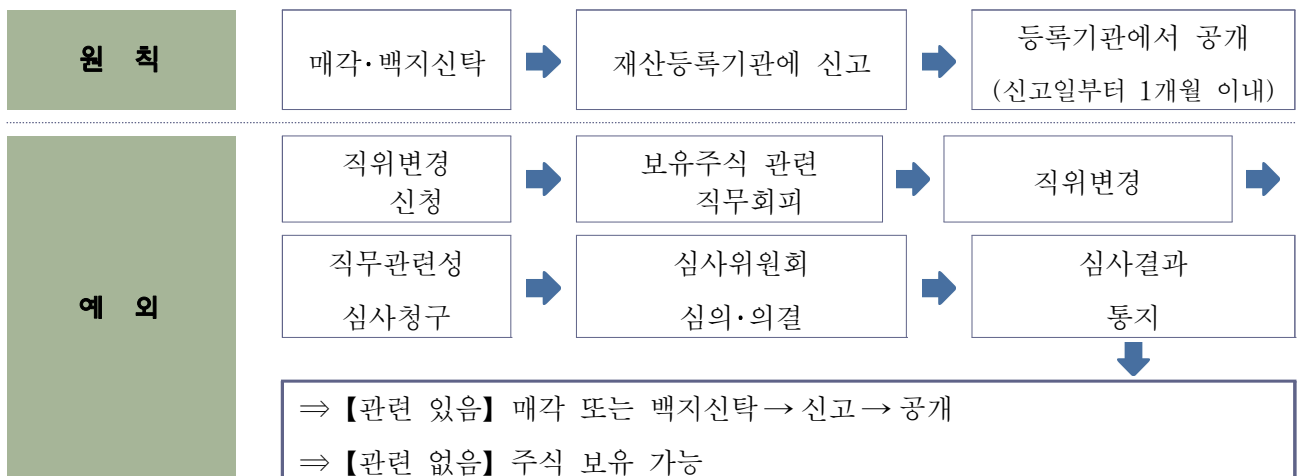
- 주요내용

- ▶ (제도개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함
-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 (대상주식)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고시’한 주식(펀드, 해외주식 등)은 가액에 상관없이 보유 가능하므로 3천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제외
- ▶ (의무이행사항) 아래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6의3①②)가 소멸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예 행안위 소속의원이 국토교통위로 배정)
- 기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

- ▶ (의무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영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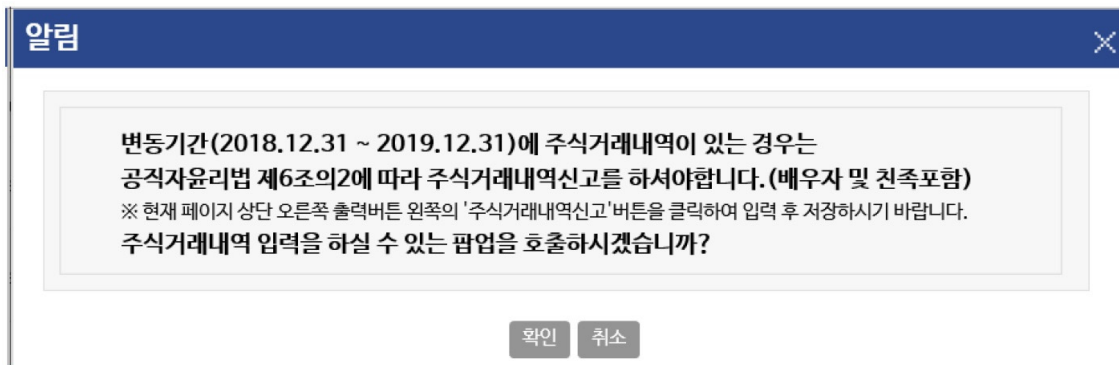
참고 3 |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 주요내용

- ▶ (목적)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 ▶ (신고대상)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제1항)
- ▶ (신고시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 ▶ (신고주식)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영 제5조의2제1항)
 - ※ 주식시장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SM, K-OTC (단, 백지신탁계약 신고 주식 제외)
- ▶ (신고내용)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모든 주식 거래내역(영 제5조의2제2항)
 - ※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 (의무위반시 제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가능(법 제22조제2호)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방법

- ▶ (신고대상 기간) 매년 1.1.부터(최초 등록된 경우 그 이후부터) 12. 31.까지 기간 중 발생한 거래내역
 - ※ '18.10.2.~'18.12.31. 기간 중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19.12.31.까지의 거래내역
- ▶ (신고방법)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고(영 제5의2제3항)
 - ※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총괄표 화면'에서 제출 가능



- ▶ (제출기간) 정기 재산변동신고 종료일인 '20.3.2.(월)까지 제출

7. 채권(사인간 채권)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 사인 간 채권의 경우 채무자명, 채무자 주소(전화번호), 채무자와의 관계 등 상세 정보를 기입
 - ◆ 사인간 채권·채무(부모-자녀간 포함)는 비조회성 재산으로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 항목이므로 차용증, 원금·이자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증빙자료 첨부 가능)
- ▶ 전세(임차)보증금은 채권 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 항목에 기입

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채무는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고, 채무의 사용처를 기재
 - 예 2천만원 금융대출 후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 [금융채무] 2천만원, [사인간 채권] 2천만원 신고
- ▶ 선거자금을 위해 다수의 사람과 설정한 채무(일명 ‘선거펀드’)의 경우 채권자는 대표 1인 외 00명으로 입력하고, ‘비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예 [채권자] 김○○외 2,300명, [비고] 6.13. 지방선거 선거펀드
- ▶ 신규발생한 사인간 채무는 발생사유·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도 사인간 채권·채무로 신고 필요
- ▶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을 반드시 기재

■ 채무 주요 누락사례

- ▶ (건물임대채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 보증금 누락
- ▶ (금융채무) 제공된 금융채무 정보를 열람만 하고 활용입력을 생략하여 채무 누락
- ▶ (사인간 채무)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사업자금지원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본인 채무 누락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 계속 보유 중인 경우(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신고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변동사항 신고
-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 품목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가액 유지
-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

11. 회원권

-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회원권을 신고
 -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 ▶ 골프회원권을 신규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매입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 그 외 회원권은 구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가액 유지
 -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12. 지식재산권

-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
-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등록번호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명세 기재
- ▶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소득원인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신규 출자내역과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당해 연도 매출액 변동사항 등을 신고
- ▶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를 확인하고, 주식회사이면 ‘주식’ 항목에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지분으로 신고
- ▶ 「상법」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이 아니며, 사업 관련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채무 등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 및 직무 등을 기입
 -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변동 내역을 신고
- ▶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
 - ◆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제외
- ▶ 교회나 종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의 소유이나 등록대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인 경우에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4 변동요약서 작성

-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 총괄표상 증감액(가액으로 계산)과 변동요약서(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계산)상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 ▶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소득은 천원 단위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세전 기준으로 합산 신고
 - ◆ 작년 정기변동 신고 작성자 : '19. 1. 1. ~ 12. 31. 기간 소득
 - ◆ '18.10.2. ~ '19.9.30. 중 최초(승진) 또는 재등록 신고자: 해당일 ~ '19.12.31. 기간 소득
- ▶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 폭이 큰 경우 재산의 증감 현황, 재산의 가액 입력 오류(단위 입력 오류 포함) 등 총괄표에 기재된 재산항목을 재확인
 - ※ 매입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의 누락 확인, 건물임대 보증금 신고 확인, 가액 오기 확인, 사인간 채권·채무,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 ▶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6천만원 증가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펀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지출) 자녀교육비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2천만원 감소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 펀드손실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생활비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서 등 참조)
- ▶ 부동산 매입·매도 등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 해당 내역

5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함)

- ▶ 재산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 재산등록기준일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입
 - (광역의원) 【소속: ○○시·도의회】 / 【직위: 장/의원】
 - (기초단체장) 【소속: ○○시·도 ○○시·군】 / 【직위: 시장·군수·구청장】
 - (소속기관) 【소속: ○○부 ○○(기관명)】 / 【직위: 사장, 총장 등】
 - 예) 교육부 부산대학교/총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 ▶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호수 기재 생략
 -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건물 —㎡
아파트 : ○○시 ○○동 ○○아파트 건물 —
특히, 외국 소재 부동산 소유권 등의 경우 세부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필요
- ▶ 자동차는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 예) 2013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 ▶ 채권·채무(건물임대채무 포함) 항목의 경우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사유란에 기재(독립생계 유지, 타인부양 등)
- ▶ (변동사유) 매도·매입·상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 개인별, 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
 - 예)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사모펀드 유형을 변동사유에 기재

6 신고서 제출

- ▶ 2020.3.2.(월) 24:00이전까지 제출
- ▶ 각 재산항목 ‘저장’ 후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신고가 완료됨
- ▶ 신고기간 중에는 제출 후에도 수정이 가능
 - ※ 신고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수정 승인 후 수정 가능

참고 4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예시)

소 속		서울특별시 의회		직 위	의원		성 명	김공개
단위(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550,000	620,000	200,000	720,000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1,000㎡	100,000	20,000	0	120,000	가액변동	
배우자	잡종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0번지 1,000㎡(1,000㎡ 증가)	0	200,000	0	200,000	장인으로부터 증여	
배우자	잡종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0번지 1,000㎡(1,000㎡ 증가)	0	200,000	0	200,000	장인으로부터 증여	
조부	임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0번지 0㎡ (1,000㎡ 감소)	200,000	0	200,000 (250,000)	0	매도	
부	대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500번지 990㎡(990㎡ 증가)	0	200,000 (200,000)	0	200,000	금융기관 차입으로 매입	
▶ 건물(소계)			350,000	450,000	150,000	650,000		
본인	아파트 (분양권)	서울 종로구 적산동 삼성아파트 90㎡(건물 90㎡ 증가)	0	150,000	0	150,000	신규분양, 분양가 : 500,000천원, 전세보증금으로 납입	
배우자	연립주택	서울 종로구 적산동 경희궁빌라 90㎡	100,000	50,000	0	150,000	가액변동	
배우자	연립주택 (분양권)	서울 종로구 적산동 덕수궁빌라 90㎡	100,000	100,000	0	200,000	중도금납부, 분양가: 300,000천원, 건물임대료로 납부	
본인	전세권 (임차권)	서울 종로구 적산동 롯데아파트 0㎡(90㎡ 감소)	150,000	0	150,000	0	계약만료	
차남	근린생활 시설	서울 종로구 적산동 현대상가 100㎡(건물 100㎡ 증가)	0	150,000	0	150,000	외조부로부터 증여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000	-	1,000	6,00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뉴소나타 배기량 (2,000cc)	7,000	0	1,000	6,000	가액변동	
▶ 예금(소계)			25,000	450,000	5,000	470,000		
본인		한국교직원공제회 90,000, 엠비케이파트너스 100,000 (100,000 증가)	10,000	0	5,000	5,000	엠비케이파트너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배우자		국민은행 15,000 신한은행 420,000(420,000 증가)	15,000	450,000	0	465,000		

Ⅲ 2020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Q&A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일부 재산을 누락 혹은 과다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질 문	답 변
1 총 론	
① 재산의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한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재산은 '19.12.31. 기준으로 '20.3.2. 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서 작성일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②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의 범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함 ▶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②-1. 재산등록 대상이 사망한 경우 처리 방법은?	▶ 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등록 제외로 친족정보변경 처리
②-2. 시부모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등록해온 경우 처리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2.3.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혼인한 여성은 시부모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직계 존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함 ▶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온 의무자는 계속적으로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법 개정 이후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본인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함
②-3.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한쪽에만 신고해도 되는지?	▶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에도, 각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②-4.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므로 재산을 등록해야함

질 문	답 변
2 부동산 (토지, 건물)	
①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취득)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으로 신고 하되,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신고 ▶ (계속보유) ①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②종전신고 시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액의 변동을 확인하여 신고
② 건물 임대(빌려줌) 또는 임차(빌림) 시 재산 신고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 채무”로 신고함 ▶ (임차)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전세권”으로 입력, 이때 제공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함
③ 건물 임차 시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항목(전세(임차)권)에 보증금만 별도로 신고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원룸 임차 ⇒ 보증금 1천만원만 전세(임차)권으로 신고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
④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신고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 항목에 건물은 건물 항목에 별도로 신고함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 항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⑤ 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 사실 관계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함
⑥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상속될 부동산이나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신고방법은?	▶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법정 상속지분을 소유권으로 신고

질 문	답 변
⑦ 공동명의 부동산 신고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재산등록대상 각각 소유한 지분만큼 면적 및 가액 등을 신고해야 함 ※ (예시) 건물 100㎡ 중 50㎡
⑧ 아파트 등 신규 분양 시 분양권의 신고 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 다만, 재산 증감 등 확인을 위해 변동요약서에 계약금 지급 또는 수취 내역 기재 ▶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 항목(분양권)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분을 합산하여 가액으로 신고하고 총분양가액을 별도로 기재

3 예금, 증권, 채무

①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는데, 그 의미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개개인별로 판단, 예금·증권·채무 각각의 항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 사례 예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 예금 합계액 7백만원, 배우자 예금 합계액 3백만원인 경우 ⇒ 등록의무 없음 2. 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원, 본인 증권 합계액 7백만원 ⇒ 등록의무 없음 3. 자녀 1인의 예금(6개 계좌) 합계액 12백만원 ⇒ 등록대상임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증권, 금융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①-1. 예금 등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증권, 채무 등 각각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 ▶ 다만, 1천만원 미만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1천만원 이상 소유하여 처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필요

질 문	답 변
②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사업 등 목적으로 본인 명의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 재산은 실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함
③ 증권계좌의 예탁금 및 간접금융상품 신고 방법은?	▶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증권 구매를 위한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권 항목이 아닌 예금 항목에 신고함 ▶ 증권회사의 간접금융상품(MMF, ELS, 수익증권 등)도 예금 항목에 신고함
④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예금, 증권, 금융채무의 신고방법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아 이를 활용하여 신고 가능
④-1. 실제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액과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정보가 상이한 경우 신고 방법은?	▶ 의무자가 직접 확인한 잔액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채산을 신고해야함 ※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자료는 참고용으로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최종 책임은 등록의무자에게 있음
④-2. 회신된 금융 정보 외 추가적인 금융채산을 소유 중인 경우 신고방법은?	▶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회신되고 있으므로 해외은행 등의 금융정보는 회신되지 않음 ▶ 미회신 금융정보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추가로 해당 재산을 등록해야함
⑤ 보장성 보험도 신고대상인지?	▶ 적립보험료가 있는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 ▶ 자동차 보험 등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제외 : 자동차 보험 등 ‘적립보험료 0원’ 상품
⑥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 등록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 인 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함 (한도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님)

질 문	답 변
⑦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은?	▶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 그 외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함
⑧ 부모-자녀간 등 등록대상 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하는지?	▶ 자녀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원룸 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부모-자녀간 발생한 사인간채권·채무도 신고하여야 함

4 기 타

① 재산신고를 잘못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재산의 일부를 착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②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 병가,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재산공개자는 20일까지, 그 밖의 등록의무자는 30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IV 공직자 재산신고 주요 실수사례

배우자 및 친족재산 누락	재산신고방법 미숙	기 타
▶ 부모 또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	▶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비서실 직원에게 대신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직원 실수로 잘못 신고하였음
▶ 이전에 받은 부모의 고지거부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몰랐음)	▶ 등록기준일과 작성 시점을 착각하여 착오(실수)로 잘못 신고함(1월 중 채무를 변제하여 변제한 것으로 신고함)	▶ 9월경 최초신고하여 특별히 변동사항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전체 변동없음'으로 신고함
▶ 부부 공무원이어서 상대방의 재산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음	▶ 채무, 소액 예금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았음(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을 계좌별 1천만원 미만으로 오인하여 미신고)	▶ 배우자가 본인 몰래 친구(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사항을 알지 못했음
▶ 부모와 자식사이에 주고받은 채권·채무는 전체 재산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음	▶ 건물은 소유권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누락)	▶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만, 과다 신고하는 것도 문제되는지 몰랐음
	▶ 분양 및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신고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했음	▶ 배우자가 상속받은 사실을 알지 못해 누락
	▶ 신고요령 및 자료 확인 미숙으로 잘못 신고하였음	▶ 오래전 가입한 보험증서, 통장 등을 분실하여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음
	▶ 임대 중인 건물의 보증금을 신고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해 누락	▶ 지난번 신고 때 특별히 지적 받은 사실이 없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신고함

▶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숙지하여 재산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

1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 1-1. 시스템 접속
- 1-2. 사전 확인 사항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 2-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 2-2.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 2-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 3-1. PETI 메뉴 주요기능
- 3-2. 신고서 작성화면
- 3-3. 본인 정보 입력
- 3-4. 친족 정보 입력
- 3-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 총괄표(종전신고내역)확인 및 부동산·금융정보 조회내역 보기
 - 재산입력방법 : 부동산(토지)~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등 16개 항목
 - 신고내역검증
- 3-6. 변동요약서 작성
- 3-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3-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 수정

- 4-1. 제출신고서 조회
-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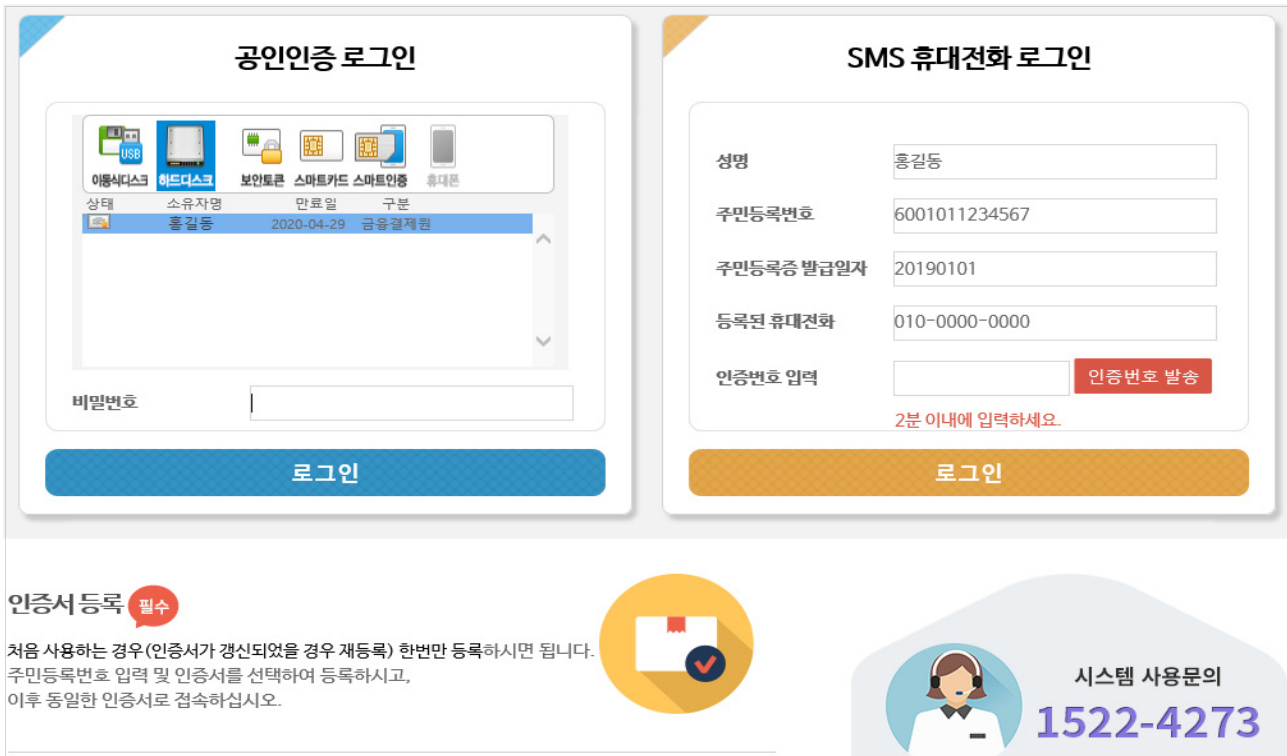
1. 공직윤리(PETI)시스템 접속

1-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 Internet Explorer 또는 Chrome을 열어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을 입력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바로가기"로 접속
- 정기변동신고 시 첫 화면에 표시되는 각종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 로그인 이용안내 클릭하여 로그인 시 오류사항에 대해 조치방법 확인

- 로그인 버튼을 클릭 시 이동하는 화면



-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거나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경우

- 인증서등록 필수 또는 을 클릭하여 본인의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한 다음 시스템 접속

-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공인인증 로그인’에 암호 입력 후 **로그인** 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접속

- 현장근무자 등 인증서가 없는 경우 ‘SMS휴대전화 로그인’ 가능

● 사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 공무원 전용,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
 - * 담당부서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www.gpki.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공인인증서(NPKI) : 금융거래용 인증서,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 ※ 인증서 저장매체 아이콘과 인증서 목록이 보여 지지 않는다면 IE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 클릭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peti.go.kr”을 등록하고 로그인 확인

1-2. 로그인 후 사전 알림내용 확인 사항

등록자 알림 메모

※ 윤리업무담당자가 심사 시 특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후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기 재산신고시 참고사항
 ○ 건물의 전세권은 "건물"항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7년 12월에 대출받은 금액중 빌려준돈은 사인간채권에 신규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동안 보지 않기

1 확인

금융정보 일괄반영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금융정보 일괄반영

아래 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금융자료를 신고서에 일괄반영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일괄반영 동의함 미동의

※ 미동의 할 경우 총괄표에서 개별 입력 가능

관계	성명	금융	비고
본인	박공직	동의	
배우자	김아내	동의	
부	박부친	동의	고지거부
모	이모친	동의	고지거부
장남	박장남	동의	
장녀	박장녀	동의	
차녀	박차녀	동의	

※ 유가증권의 경우 상장주식만 일괄반영됩니다.
 상장주식을 제외한 비상장주식, 채권 등은 개별 입력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정보의 경우 일괄반영되지 않습니다.
 총괄표에서 개별 입력하여야 합니다.

2 확인

홍길동님은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입니다.
 반드시 2020.03.02까지 신청하셔야만 고지거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재심사 신청 바로가기

해원백업

- ▶ ①은 심사담당자가 이전 신고서 심사 중 등록의무자가 유의할 사항을 메모한 내용
 - 심사관 알림사항이 있는 등록의무자의 경우만 표시됨
 - 이후에는 재산 항목별 신고 시 심사관 알림사항 버튼으로 알림메모 상시 확인가능

- ▶ ②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에 대해 회신 받은 금융자료를 일괄반영 하는 기능
 - ※ 최초 1회만 발생하는 팝업으로 '동의' 시 예금·보험, 유가증권, 금융채무가 회신 받은 자료로 반영, 미동의 시 개별적으로 '금융정보활용입력' 하여 반영 가능(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③은 올해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대상인 등록의무자에게 안내하는 메시지 창으로 재심사 신청 바로가기 를 클릭하면 고지거부 신청 메뉴로 이동
 -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계속해서 친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려는 경우 정기변동신고기간인 1~2월 중에 반드시 재심사 신청해야 함

2. 고지거부 허가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1. 고지거부 허가 현황 확인

로그인: 홍길동님 · 재산변동신고서 (정기변동) · 공개구분: 비공개 · 등록기준일: 2019.12.31 · 제출마감일: 2020.02.28 · 고지거부 신청마감일: 2020.01.31

PETI 공직윤리시스템 마이페이지 재산신고 주식백지신탁 취업심사 게시판

친족정보

· 친족정보입력

· 정보제공동의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자가진단

·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 고지거부 신청

심사기준보기 고지거부 사유별 증빙서류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 작성 및 제출가능
 심사결과가 '불허' 또는 '반려'인 경우(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해당 친족을 등록해야 함

친족정보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이여일	800101-2222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2길 25 25, 202동 101호 (논현동, 두산위브아파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부	홍공	500202-33333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8,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모	홍경	550303-444447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8,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2019-12-31~2022-12-30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장남	홍익	900505-555558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성로 67, 401호 (주교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장녀	홍주	920606-6666699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길 1, A동 (효자동, 강원대학교 기숙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1 고지거부 신청(진행)현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신청사유	진행단계	신청일
부	홍공	500202-3333366	허가	독립생계유지	제출완료	2020-01-20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현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심사결과	고지거부(기간)	사유	증빙서류
모	홍경	550303-4444477	2020-01-20	허가	2019-12-31~2022-12-30	독립생계유지	

▶ 로그인 후 나타나는 메뉴 중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신청] 메뉴 클릭

- ①은 고지거부 신청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고지거부 신청내역** 클릭 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 고지거부 진행단계별 유의사항

- (작성중) 신청내역 작성중으로 저장만 된 상태, 고지거부 신청기한 내에 제출 필요

- (제출완료) 신청내역이 제출되고 윤리담당자가 심사 중인 상태, 신청내역 수정 불가

※ 고지거부신청이 심사 중인 경우 신고서제출이 불가하며 심사완료 이후 제출가능

- (심사완료) 고지거부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족정보' 입력 시 해당 친족의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여 신고서 제출

※ [신고서작성]→[친족정보입력]에서 해당 친족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에서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

2-2. 기존에 고지거부 허가 신청내역 확인

로그아웃 | 고지거부 신청마감일 : 2020. 01. 31. | 제출마감일 : 2020. 02. 28. | 등록기준일 : 2019. 12. 31. | 공개구분 : 비공개 | 자산변동 신고서 (정기변동)

마이페이지 | 자산신고 | 주식백지신탁 | 취업심사 | 게시판

PETI 공직윤리시스템

친족정보 |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 고지거부 신청 | 심사기준보기 | 고지거부 사유별 증명서류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야 신고서 작성 및 제출가능
 심사결과가 '불허' 또는 '반려'인 경우(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해당 친족을 등록해야 함

친족정보 | 친족정보입력

고지거부 신청내역

신청일	소속	직급	직위	신청구분	신청인원	허가인원	불허인원	반려인원	처리단계
2020-01-20		6급		허가	2	2	0	0	심사완료

고지거부 신청내역

등록대상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신청내역

2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현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심사결과	고지거부(기간)	사유	증빙서류
모	홍경	550303-4444477	2020-01-20	허가	2019-12-31~2022-12-30	독립생계유지	

- ▶ ① **고지거부 신청내역** 클릭하여 이전 신청한 고지거부 상세내역 확인
- ▶ ② 고지거부 심사결과 현황에서 "고지거부기간"을 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심사 신청
 - ※ (예시) 고지거부기간의 만료일이 2020.12.30.인 대상자는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간('20.1월~2월) 중 고지거부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 대상자임

2-3.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고지거부신청

성명	홍길동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허가 <input type="radio"/> 재심사	신청일	2020-01-20	공개여부	비공개
소속	인사혁신처	직급	6급	직위	

관계	친족명	주민등록번호	고지거부사유	기타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	홍길	5002002-3333366	독립생계유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	홍경	5503003-4444477	독립생계유지

고지거부 사유별 증빙서류 | 친족에서추가 | 삭제 | 서식다운로드

고지거부신청서 | 찾아보기...
 증빙서류1 | 찾아보기...
 증빙서류: | 찾아보기...

※ 고지거부기간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저장 | 알기

고지거부(기간) | 등록대상 | 등록제외 | 정보제공동의
 부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고지거부 자가진단 | **고지거부 신청** | 고지거부 신청내역

진행단계 | 신청일

사유 | 증빙서류

- ▶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할 경우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신청] 메뉴에서 **고지거부 신청** 버튼을 클릭
- ▶ **친족에서추가** 버튼 클릭하여 고지거부 신청 친족을 선택 후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 내역을 작성,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저장** 하고 상세화면에 새롭게 생성되는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만 고지거부 신청이 완료됨
 - **서식다운로드** 클릭하여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및 친족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의 재산항목을 모두 등록하여야 함**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

마이페이지

▶ 재산신고 ▶ 친족정보 ▶ 정보제공동의

▶ 현 화면(정보제공동의)에서 신규추가한 친족은 동의서 제출까지 완료 해야 추가한 친족 정보가 저장 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상태에서 다른 메뉴(화면)로 이동하면 신규추가한 친족 정보는 사라짐.
 ▶ 정보제공동의서 제출방법
 1) 동의할 대상자 및 동의여부 선택(금융, 부동산) -> 2) **동의서 내려받기** 버튼 클릭 후 출력하여 서명 -> 3) 스캔하여 파일 첨부 후 **동의서 제출**

정보제공 동의신청 친족추가 추가친족 삭제 제출이력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신고서		동의여부	
			등록기준일	고지거부	금융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부	홍공	500202-3333366	2019-12-3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	홍경	550303-4444477	2019-12-31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첨부파일 (필수) 찾아보기...

※ 동의서 첨부파일은 진본성 검증확인을 위해 PDF 파일만 가능 합니다.

동의서 내려받기 **동의서 제출**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동의(철회)서		부동산동의(철회)서		철회여부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금융	부동산	철회사유
<input type="checkbox"/> 본인	홍길동	830101-1234567	동의	2019-09-25	동의	2019-09-2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이여왕	800101-2222255	동의	2019-09-25	동의	2019-09-2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남	홍익	900205-5555588	동의	2019-09-25	동의	2019-09-2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장녀	홍주	920606-6666699	동의	2019-09-25	동의	2019-09-2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필수) 찾아보기...

※ 철회서 첨부파일은 진본성 검증확인을 위해 PDF 파일만 가능 합니다.

철회서 서식 다운 **철회서 제출**

- ▶ 금융 및 부동산 동의·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 메뉴 클릭
- ▶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할 친족을 선택하고 **동의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 제공동의 신청 가능(동의하고자 한 경우 동의자의 친필서명(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받아 제출)
- ▶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시 제공하며 제공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산 신고
- ※ **정보제공에 동의한 친족이라도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인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1. PETI 메뉴 주요기능

1. 홈길동님 · 재산변동신고서 (정기변동) 2. 공개구분 : 공개 3. 등록기준일 : 2019.12.31. 4. 제출마감일 : 2020.03.02. 5. 고지거부 신청마감일 : 2020.01.31. 로그아웃

PETI 공직윤리시스템 마이페이지 재산신고 주식백지신탁 취업심사 게시판

2.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정보제공동의
- 친족정보변경
- 고지거부신청
- 신고기한연장신청
- 신고유예신청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소속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고서 : 작성중
 > 등록기준일 : 2019.12.31.
 > 제출마감일 : 2020.03.02.

재산변동신고서(정기변동)
 >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고서작성

연도별 재산총액 변동(최근 5회) 예금/보험 항목 재산변동 심사처분결과(최근 3회)

등록기준일 처분결과
 처분 내역이 없습니다

친족현황 - 현재 등록된 친족현황입니다. 수정사항은 신고서 작성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등록제외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김아내	781128-298765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부	박부친	500101-1234567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노을3로 14, 109동 303호 (한솔동, 첫마을1단지)	(2018-01-01 ~ 2020-12-30)			동의	동의
모	이모친	510101-2123456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노을3로 14, 109동 303호 (한솔동, 첫마을1단지)	(2018-01-01 ~ 2020-12-30)			동의	동의
장남	박장남	131121-312345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차녀	박차녀	090705-4321657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노을3로 14, 109동 303호 (한솔동, 첫마을1단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 ▶ ①은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종류 및 일정 안내
- ▶ ②는 PETI 시스템의 메뉴 주요기능

메뉴명	하위메뉴	주요기능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조회 및 출력
	재산변동요약서 조회	과거 변동요약서 조회 및 출력
	공개목록조회	과거 공개목록 조회 및 출력(공개자에 한함)
	연도별 변동흐름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간의 변동흐름 조회
	소명서관리	소명서 작성 및 소명이력조회
	보완신고서 관리	보완신고 이력 및 보완요청 내역 조회
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동의 철회서 제출 및 신청내역 확인
친족정보변경		등록된 친족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변경
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3-2. 신고서 작성화면

홍길동님 : 재산변동신고서 (정기변동) 공개구분 : 공개 등록기준일 : 2019.12.31. 제출마감일 : 2020.03.02. 고지거부 신청마감일 : 2020.01.31. 로그아웃

PETI 공직윤리시스템 마이페이지 **재산신고** 주식백지신탁 취업심사 게시판

마이페이지

- ▶ 마이페이지
- 신고서조회
- 정보제공동의
- 친족정보변경
- 고지거부신청
- 신고기한연장신청
- 신고유예신청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소속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고서 : 작성중
- 등록기준일 : 2019.12.31.
- 제출마감일 : 2020.03.02.

재산변동신고서(정기변동)

-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고서작성

연도별 재산총액 변동(최근 5회) (단위: 억)

연도	재산총액 (억)
2018	~6.5
2018	~6.5
2019	~4.5

항목 재산변동 (단위: 천원) 예금/보험

연도	재산변동 (천원)
2018	~40,000
2018	~40,000
2019	~45,000

심사처분결과 (최근 3회)

등록기준일	처분결과
처분 내역이 없습니다	

친족현황 - 현재 등록된 친족현황입니다. 수정사항은 신고서 작성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등록제외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김아내	781128-298765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부	박부친	500101-1234567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노을3로 14, 109동 303호 (한솔동, 컷마을1단지)	(2018-01-01 ~ 2020-12-30)			동의	동의
모	이모친	510101-2123456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노을3로 14, 109동 303호 (한솔동, 컷마을1단지)	(2018-01-01 ~ 2020-12-30)			동의	동의
장남	박장남	131121-312345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차녀	박차녀	090705-4321657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노을3로 14, 109동 303호 (한솔동, 컷마을1단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 ▶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재산신고** 메뉴 또는 화면 우측의 **신고서작성** 버튼클릭
- ▶ 정기변동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출완료** 버튼이 보임
- ▶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 본인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신고서 생성 요청

▶ 주소 입력 방법

구 분	처리방법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주소찾기로 검색 후 선택
도로명주소 없는 경우	①을 [기타]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주소가 국외(해외)인 경우	①을 [국외]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 ▶ 항목 입력을 마치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친족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 ▶ 의무자의 자택주소 변경 시 팝업되는 친족주소 일괄변경 알림 처리



기 능	내 용
	친족의 자택 주소를 등록의무자가 변경한 주소지로 일괄 변경 실행
	등록의무자의 자택 주소만 변경하고 친족의 자택 주소는 ‘친족정보입력’에서 직접 변경

3-4. 친족 정보 입력

■ 친족현황(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STEP.01 본인정보 **STEP.02 친족정보** STEP.03 종괄표작성 STEP.04 변동요약서 STEP.05 신고서제출

🏠 > 재산신고 > 친족정보입력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록대상 친족보기**
 * 친부모가 아닌 계부(새아버지), 계모(새어머니),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결혼한 딸 등은 대상이 아님

* 대상자를 선택하면 친족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하시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형태	직업	고지거부(기간)	등록대상	등록제외	정보제공동의	
									부동산	금융
배우자	이여일	800101-2222255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15 (도담동, 도렘마을9단지)	자가	회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부	홍공	500202-333336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자가	회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모	홍경	550303-444447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무삼지로, 602동 108호 (인후동1가, 부영6차아파트)	자가	무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장남	홍익	900505-555558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상로, 401호 (주교동)	자가	주)공익...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장녀	홍주	920606-6666699	강원도 춘천시 호지동 강원대학길 (호지동, 강원대학교 기숙사A동)	자가	대학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	동의

※ 직계 존속·비속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시면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2**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체크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체크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 자녀없음에 체크 등록대상 자녀없음

미등록 친족 **3**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동의(원회)서		부동산동의(원회)서		비고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차녀	홍지	950101-2121212	동의	2019-09-25	동의	2019-09-25	미등록 친족추가

저장파일 파일삭제 파일내려받기

파일첨부 **찾아보기...** **파일업로드**

※ 친족정보 신고내역 중 별도의 소명(가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혼, 사망 등) 필요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선택 후 [파일업로드] 버튼을 눌러야 파일이 저장됩니다.
 ※ 첨부파일은 1개만 등록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업로드한 파일 1개만 유효 합니다. tif, jpg, jpeg, gif, png, o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현황 수정


- 등록기준일('19.12.31.) 시점으로 이전과 변동사항이 있는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주소나 직업, 등록상태(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 변동사유 등을 수정

※ 기존에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등록상태에 이미 '고지거부자'로 체크되어 있음.

신규로 고지거부 "허가" 받은 친족만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선택 가능

- ▶ ①에서 친족의 거주형태가 선택되지 않은 친족이 있을 시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해당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거주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등)를 선택하여 저장
- ▶ ②에서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여 저장
 - 직계존속(부모)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부/모} 란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미혼/이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자녀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등록대상 자녀 없음} 란에 반드시 체크
- ▶ ③은 친족현황에 친족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으로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상태	조치방법
등록대상 친족인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친족으로 등록
등록대상 친족이 아닌 경우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 사망, 혼인 등 변동 친족에 대한 참고자료 있다면 첨부하여 등록
- ▶ 모든 작업완료 후  버튼 클릭

■ 등록된 친족정보 변경 시(고지거부, 등록제외 등)

친족정보수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관계	장녀	성명	박공주	주민등록번호	860606-6666804
----	----	----	-----	--------	----------------

추가정보

등록상태(필수) 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사망, 혼인) ?

직업(필수) ?

==선택== ▼

자택주소(필수) 도로명 주소찾기

동 호 (,) ?

거주형태(필수) ▼

변동사유(필수) ?

저장
변동취소
닫기

- ▶ 친족현황에서 변경할 친족의 주소를 클릭하여 친족정보 수정 처리
- ▶ 등록대상자 또는 고지거부 허가자가 사망, 혼인 등의 사유로 등록제외자가 된 경우 ‘등록제외자’를 클릭하고 ‘변동사유’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 ※ 고지거부 허가받은 친족을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팝업 발생하며, 해당 팝업에서 바로 고지거부 적용 가능

알림

고지거부 허가자 (부 박부친, 모 이모친)가 있습니다.
고지거부자로 적용하고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친족추가

친족정보추가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관계 (필수)	자녀
성명 (필수)	홍지
주민등록번호 (필수)	950101 - 2121212 실명인증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

추가정보

등록구분 (필수)	<input checked="" type="radio"/> 등록대상자 <input type="radio"/> 고지거부자
직업 (필수)	대학생
지택주소 (필수)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15 (도담동, 도람마을9단지)
	도로명 30098 주소찾기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15 15 9 동 909 호 (도담동, 도람마을9단지)
거주형태 (필수)	자가
변동사유	

저장

취소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을 하고 ‘추가정보’ 입력,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저장** 을 선택

※ 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인 경우

- ‘외국인 여부’에 체크 후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인 경우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에 체크 후 생년월일만 입력

예) 76.12.5.생 남자 외국인의 경우 “760000-1000000” 또는 “761205-1000000”으로 등록

3-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 재산총괄표 보기

총괄표작성

- ▶ 토지 1
- ① 건물
- ① 자동차
- 현금(수표)
- ① 예금/보험 금융정보
- 정치예금
- ① 유가증권 금융정보
- 사인간 채권
- ① 채무 금융정보
- 금 및 백금
- 보석류
- 골동품및예술품
- ① 회원권
- 지식재산권
- 출자지분
- 출연재산
- 총괄표
- 신고내역검증

STEP.01
본인정보

STEP.02
친족정보

STEP.03
총괄표작성

STEP.04
변동요약서

STEP.05
신고서제출

▶ 재산신고 > 부동산(토지)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선택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22,100	0	0	22,100	
<input type="checkbox"/>	①	본인	홍길동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5,000.00㎡	소유권	22,100	0	0	22,100	변경

이전
다음

- ▶ 16개의 재산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항목별 목록이 나타나면 변경 처리
 -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 오른쪽의 추가 버튼 클릭
 - 신고된 재산을 변동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하여 진행
 - ① '①'이 있는 항목은 변동 처리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처리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분양권) 입력방법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번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선택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22,100	0	0	22,100	
조회 자료가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1	본인	홍길동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5,000.00㎡	소유권	22,100	0	0	22,100	변경

변동제산 ※ 가액이나 면적 변동시에는 체크없이 변동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상실 소재지 오기정정 행정구역 변경

관계	본인
권리자	홍길동
권리종류	소유권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지목	임야

면적변경(필수)	前 면적	現 면적(필수)	증가 면적	감소 면적
		5,000 (㎡)	5,000 (㎡)	0 (㎡)

가액변경(필수)	前 가액	現 가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22,100 (천원) <small>[이전이백일십만원]</small>	22,100 (천원) <small>[이전이백일십만원]</small>	0 (천원)

[공시가격조회](#)를 클릭하면 공시가격 자동조회 / 인터넷망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릭하여 공시가격 확인가능

現 실거래가격 (천원)

※ 소유(전세)권 상실 등으로 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래가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타(상속증여 등)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상속' 또는 '증여' 문구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액변동여부(필수) 예 아니오 ※ 면적의 변동없이 부동산의 공시가격등 평가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 "예"를 선택하십시오

변동사유(필수)

※ 매매, 기타(상속증여 등) 권리 증감 사유와 자금출처, 사용용도를 기재 하십시오.

파일첨부 [찾아보기...](#)

※ [저장]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토지 공시가격 변경 방법

- ① [공시지가일괄반영](#) 은 기존 신고 항목에 소유권, 사실상소유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 법정동 주소가 정상 입력되어있는 재산항목에 대해 일괄반영 가능
-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존 신고금액보다 조회된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항목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함

- ▶ 토지를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공시가격을 변경할 경우 ‘공시가격조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확인 후 신고
- ▶ 이전 재산신고 시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현 신고기준일의 공시지가가 높아진 경우만 가액변경 처리(공시지가가 낮으면 現 가액 유지)
- ▶ 토지를 신규 취득한 경우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
- ▶ 가액이 일괄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조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하여 개별 조회하여 변경 처리
 - 소재지 정보(법정동 코드)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자동조회 됨

공시지가 조회
✕

면적	1,323 (㎡)
개별공시지가(원/㎡)	74,200 (원)
가액 (필수)	98,167 (천원) (98,166,600 원)

확인
닫기

- **확인** 을 클릭하여 “가액(면적*개별공시지가)”이 입력되며, “現 가액” 입력 시 증가/감소액이 자동계산 됨
- ▶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 토지 소재지가 오기된 경우 “소재지오기정정”에 체크하여 소재지 변경 가능
 - ※ 토지의 매도·매입인 경우는 소유권상실, 추가 입력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 ▶ 항목별 특이사항이나 참고사항 있을 경우 첨부파일 등록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토지 부동산정보열람

재산신고 · 부동산(토지)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자) 의 경우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토지) 정보내역**

※ 소재지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 토지정보는 국토부 "토지대장"이므로 등록기준일의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지수	변동일자	정보제공처
홍길*	2019-12-3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이오리 10번지		5,000.00		2009-07-01	대법원 국토부

출력 닫기

신규재산

권리종류(필수)
 ※ 타인에게 임대(전,월세)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을 채무항목에 '임대채무'로 신고하십시오.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필수) 주소찾기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이오리 일반 10 - 번지
 동 호
 ※ 소재지 정보(지번)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공시가격이 자동계산 됩니다.

지목(필수) ==선택==

전체면적(필수) (㎡)

취득형태 매입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자 추가 공유자 삭제

권리자(필수)	지분면적(필수)	가액(필수)	실거래가격(실매입액)(필수)
==선택==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천원)	<input type="text"/> (천원)

- ▶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한 등록의무자는 ① **부동산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부동산 소유 정보 확인 가능(정보제공처의 사정으로 실제보유정보는 다를 수 있음)
-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신규로 추가할 경우 해당 소재지 주소를 클릭하여 기본정보가 표시되면 추가적인 정보 입력하여 저장
-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어 보여지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함
- ▶ ② 취득형태에 따라 매입의 경우 실거래가격, 상속 등의 경우 공시지가 조회하여 입력
- ▶ 공동소유토지는 **공유자 추가** 클릭하여 소유 지분만큼의 면적·가액 입력

건물(소유권·전세(임차)권·분양권) 입력방법

☞ 재산신고 > 건물(소유권·전세권·분양권)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알림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공시가격일괄반영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증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747,177	0	0	747,177	
<input type="checkbox"/>	1	본인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8번지 두산위브아파트 202동 101호 건물 68.48㎡ 중 68.00㎡	소유권	594,000	0	0	594,000	변경
<input type="checkbox"/>	1	배우자	이여왕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01동 101호 건물 84.84㎡ 중 84.00㎡	소유권	153,177	0	0	153,177	변경

변동재산 ※ 가액이나 면적 변동시에는 체크없이 변동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상실 ! 소재지 오기정정 행정구역 변경

관계	배우자			
권리자	이여왕			
권리종류	소유권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01동 101호			
종류 및 용도	아파트			
건물전체면적	84.84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유지분 여부			
건물면적변경(㎡수)	前 건물면적	現 본인지분(㎡수)	증가 본인지분	감소 본인지분
	84 (㎡)	84 (㎡)	0 (㎡)	0 (㎡)
대지면적변경(㎡수)	前 대지면적	現 대지면적(㎡수)	증가면적	감소면적
	0 (㎡)	0 (㎡)	0 (㎡)	0 (㎡)
가액변경(천원)	前 가액	現 가액(천원)	증가액	감소액
	153,177 (천원)	153,177 (천원) <small>(일억오천삼백칠십일만칠천원)</small>	0 (천원)	0 (천원)

공시가격조회 를 클릭하면 가액자동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망에서 클릭하여 공시가격 확인가능

現 실거래가격 (천원)
 ※ 소유(전세)권 상실(매매)로 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실거래가격(매매가격, 취득가 등)로 신고 단, 기타(상속 등)로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상속' 또는 '증여' 문구 입력

가액변동여부 (천원)
 예 아니오
 ※ 면적의 변동없이 부동산의 공시가격등 평가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 "예"를 선택하십시오

변동사유 (천원)
 ※ 매매, 기타(상속증여 등) 권리 증감 사유와 자금출처, 사용용도를 기재 하십시오.

파일첨부 찾아보기...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건물 공시가격 일괄변경 방법

- ① **공시가격일괄반영**은 기존 신고 항목에 소유권, 사실상소유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 법정동 주소가 정상 입력되어있는 재산항목에 대해 일괄반영 가능
-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가능)**
- 기존 신고금액보다 조회된 공시가격이 낮을 경우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항목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함

- ▶ 종전에 신고한 건물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이전 재산신고 시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현 신고기준일의 공시가격이 높아진 경우만 가액변경 처리(공시가격이 낮으면 現 가액 유지)
- ▶ 건물을 신규 취득한 경우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전용면적만 기재)
- ▶ 건물 소재지가 오기된 경우 “소재지오기정정”에 체크하여 소재지 변경 가능
 - ※ 건물의 매도·매입인 경우는 소유권상실, 추가 입력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 ▶ 면적은 m²(1평은 3.3m²),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
- ▶ 가액이 일괄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조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클릭하여 개별 조회하여 변경 처리

공시가격조회
✕

면적	42.49 (m ²)	(84.98m ²)
공동주택가격	248,000,000 (원)	
가액 (필수)	122,542 (천원)	(122,541,176 원)

가액 = (건물지분면적 / 건물면적) * 공동주택가격
 확인
닫기

- 소재지 정보(법정동코드, 지번 등)와 종류 및 용도를 정확히 입력해야 공시가격이 자동조회 됨 (단, 단독주택·아파트 등에 한함)

■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 (토지+건물 일괄공시) 아래 평가액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산되어 있음

주택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개인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다세대주택		
▶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 공시가격이 있는 일부 상가·빌딩·오피스텔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	국세청 기준시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토지/건물 별도공시) 토지 또는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 아래 평가액으로 산정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공시가격 없는 건물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서울 소재 - “이택스” 홈페이지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 외 소재 - “위택스” 홈페이지 [전체메뉴]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 일괄공시 되는 평가액이 없는 건물 및 무허가 건물은 위 표에 따라 별도 공시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신고

- ▶ 매도,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가격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건물 부동산정보열람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된 부동산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번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부동산(건물) 정보내역

※ 소재지를 선택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 건물정보는 "지방세 과세자료(매년 6.1)"이므로 등록기준일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기준일자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신 후 신고바랍니다.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소재지	면적(㎡)	지분비율	취득일자	정보제공처
이여*	2019-12-3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개나리아파트 1동 101호	84.00		2009-02-01	대법원 행안부

2 번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신규재산

권리종류(필수) 소유권 임대여부 임대여부
※ 타인에게 임대(전,월세)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채무항목에 "임대채무"로 신고하십시오.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필수) 1 동 101호
※ 소재지 정보(지번)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공시가격이 자동계산 됩니다.

종류 및 용도(필수) ==선택==

건물면적(필수) 전체면적: 0 (㎡)
 대지면적 전체면적: 0 (㎡)

취득형태 매입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자(필수) 건물지분면적(㎡) 대지면적(㎡) 가액(천원) 실거래가격(실매입액)(천원)
※ 온라인으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허가 건물의 경우 매입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

변동사유(필수)
※ 매매, 기타(상속, 증여 등) 권리 증감 사유와 자금출처, 사용용도를 기재하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외화종류(달러, 파운드 등)를 기재하십시오.

파일첨부
※ [저장] 버튼을 선택 해야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한 등록의무자는 ① **부동산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부동산 소유 정보 확인 가능(정보제공처의 사정으로 실제보유정보는 다를 수 있음)
-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신규로 추가할 경우 해당 소재지 주소를 클릭하여 기본정보가 표시되면 추가적인 정보 입력하여 저장
-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6.1.기준)’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어 보여지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함
- ▶ ② 취득형태에 따라 매입의 경우 실거래가격, 상속 등의 경우 공시가격 조회하여 입력
- ▶ 공동소유토지는 **공유자 추가** 클릭하여 소유 지분만큼의 면적·가액 입력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재산신고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 계속 보유하는 경우(상속·증여포함) 보험기준 가액, 시가표준액 순으로 신고 /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란에 신고
 - ※ 신규 추가 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명세를 신고하고, 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58,000	0	0	58,000	
<input type="checkbox"/>	!	본인	홍길동	10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51보1084	자동차	20,000	0	0	20,000	변동없음
<input type="checkbox"/>	!	배우자	이여왕	15년식 제네시스 배기량(5,038cc), 23너3112	자동차	38,000	0	0	38,000	변동없음

변동재산

권리명세변경(차량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체크를 하십시오.)

관계	본인
권리자	홍길동
권리종류	자동차
권리명세	10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51보1084
소유여부	<input type="checkbox"/> 공동지분
	<input checked="" type="radio"/> 대표소유자 <input type="radio"/> 공동소유자
	공동소유자 수 : <input type="text"/>
	소유자 지분율 : <input type="text"/> (%)

소유권 상실(매도, 증여, 상속, 멸실, 폐차 등)의 경우 체크를 하십시오.

가액변경 (필수)	前 가액	現 가액 (필수)	증가액	감소액
	20,000 (천원) [이전만]원	<input type="text" value="20,000"/> (천원) [이전만]원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 자동차보험상 차량기준가액을 기재하며,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세표준)을 기재하고, 기준가액 등 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의 실매입액을 '실거래가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現 실거래가격	<input type="text" value="0"/> ※ 소유권 상실 등으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액변동여부 (필수)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변동사유 (필수)	<input type="text" value="가액변동 없음"/> ※ 매매, 상속, 증여 등 권리 증감 사유와 자금출처, 사용용도를 기재 하십시오.			

파일첨부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연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번호, 신규(이전)등록일, 소유여부, 평가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공동소유일 경우 **+** **소유자추가** 클릭하고, 공동소유자 수와 지분율(소수점 이하 절사), 가액입력
- ▶ 종전에 신고 건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 ▶ 자동차의 경우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며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
- ▶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등 확인)
- ▶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소유권으로 신고하지 않음**

운용리스	<p>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자동차 반납(≒렌터카)</p> <p>-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란에 신고</p> <p>※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란에 신고하되, 렌트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p>
금융리스	<p>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할부구매)</p> <p>-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란에 신고하되, 채권의 '비고'란에 리스 관련 사실관계 기재</p> <p>※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처리</p>

- ▶ 매도·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소유권 상실**에 체크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 클릭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홈](#) > [재산신고](#) > [현금\(수표\)](#)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15,000	0	0	15,000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배우자	이여왕	현금		15,000	0	0	15,000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소비(※ 보유 현금을 전액 소비하였을 경우에만 체크 하십시오.)

보유액 (필수)	前 보유액	現 보유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15,000(천원) [일천오백만원]	<input type="text" value="15,000"/> (천원) [일천오백만원]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변동사유 (필수)	<input type="text"/>			

파일첨부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총괄표 현금항목 오른쪽의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 ▶ 종전에 신고한 현금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변동된 보유액을 "現 보유액"에 입력
- ▶ 보유액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 소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예금·보험 입력방법

◆ 재산신고 · 예금/보험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 **금융정보열람** 클릭하여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신고 가능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계좌번호	권리종류	총잔액	변동액		현재잔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계						77,100	0	0	77,100	변동사유기재
<input type="checkbox"/>	①	본인	홍길동	국민은행 (457615-01-333333-2)	연금보험	5,500	0	0	5,500	변경
<input type="checkbox"/>	①	본인	홍길동	신한은행 (110-345-1661313)	올케어보험치료	8,000	0	0	8,000	변경

변동재산

권리명세변경(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체크를 하십시오.)

관계	본인
소유자	홍길동
예탁기관	국민은행
예금종류	연금보험
계좌번호	457615-01-333333-2

해약(※ 선택된 예금(보험)계좌를 해약한 경우 체크하십시오.)

보유액변경 (필수)	前 보유액	現 보유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5,500(천원) [오백오십만원]	5,500 (천원) [오백오십만원]	0(천원)	0(천원)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보유액이 마이너스인 예금은 채무항목에 신고하십시오
 *외화예금은 신고기준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신고하십시오

계설일자: 2007-10-03
 만기일자:
 특기사항:

파일첨부: 찾아보기...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변동취소
저장
작성취소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100% 보장성 보험 제외), 양도성 예금증서(CD), 수익증권(펀드 등) 및 투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

※ 봉급에서 자동이체 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예금 누락 주의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예금(보험)항목을 클릭하여 증감 및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예금(보험)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19.12.31.)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변동하여 신고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추가** 할 경우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보유액, 특기사항을 입력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계좌번호가 없는 사모펀드의 경우 '계좌번호'란에 '-' 기재)

- ▶ 보유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해약”에 체크 후 특기사항 입력(0원과 해약은 다름)
- ▶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괄표의 예금항목 **변동사유기재** 버튼을 클릭하여 예금항목의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① **금융정보열람** 을 클릭 아래화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 함

금융 정보내역

금융 보유정보에 대한 조회결과 ※ 성명이 금융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출력 닫기

1.예금보유정보 2.증권보유정보

1.예금보유정보(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 등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상품)종류	예금잔액(천원)	대손잔액(천원)	계좌개설일
계				63,580	43,000	
홍길*	2019-12-31	국민은행(1124512345612)	국민대출	0	40,000	2009-02-18
홍길*	2019-12-31	국민은행(457615-01-3333333)	연금보험	5,000	0	2009-02-18
홍길*	2019-12-31	신한은행(110-345-1661313)	올커버암치료	6,480	0	2009-05-01
홍길*	2019-12-31	신한은행(4512456851231)	신한대출	0	3,000	2009-05-01
홍길*	2019-12-31	우리은행(국내)(1002-135-1111111)	우리스마트적금	22,100	0	2010-05-03
이여*	2019-12-31	국민은행(412345-01-4444444)	자유적금	2,500	0	2009-02-18
이여*	2019-12-31	국민은행(431564-02-6134812)	형익저축	3,500	0	2009-02-18
이여*	2019-12-3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13-4943512)	암플러스종신보험	24,000	0	2007-10-03

출력 닫기

※ ① **금융정보열람** 은 예금·보험, 채무, 증권의 보유정보를 열람만 하는 것이며, 해당 자료의 이상여부를 확인

- ▶ 제공된 금융자료가 이상이 없는 경우 ②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변경 및 신규 추가 가능(로그인 초기에 일괄반영에 동의한 경우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으나 반영된 내용의 오류 여부는 반드시 확인 필요)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 재산신고, 예금/보험, 금융정보활용입력

금융정보활용입력(예금/보험 등)

○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표입니다.

계좌별 기준일자 가액은 확인하신 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다를 경우 직접 가액을 수정(입력) 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계좌번호 등을 잘못 신고한 계좌(빨간색으로 표시)는 현재가액을 '0'원 표시된 대로 신고해야 이후부터 표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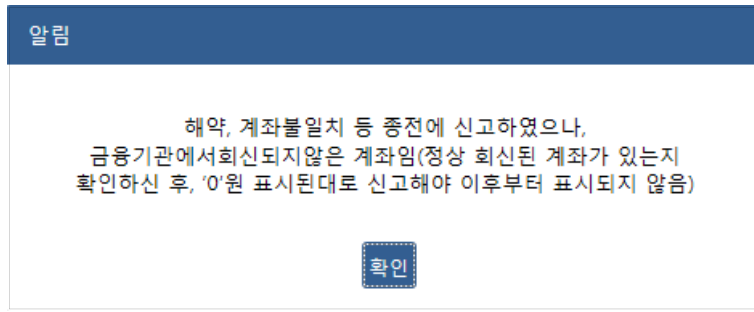
○ 금융정보활용입력 내용의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 후, 페이지 하단의 **일괄저장** 버튼 클릭시 확인한 내용이 일괄저장되고 신고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계좌

관계	소유자	예탁기관(계좌번호)	예탁종류	①	②	증가액 (천원)	감소액 (천원)	비고
				종전가액 (천원)	현재가액 (천원)			
본인	박공직	국민은행 (054-21-0756-555)	KB종합통장-저축예금	500	0	0	500	미회신
본인	박공직	농협중앙회 (351-0269-8473-11)	보통예탁금	10,000	0	0	10,000	미회신
본인	박공직	농협중앙회 (351-0269-8473-11-0)	보통예탁금	0	11,000	11,000	0	
본인	박공직	신한은행 (110272821097)	신한 주거대 우대통장(저)	0	1,220	1,220	0	
본인	박공직	우리은행(국내) (1002-852-474559)	저축예금	5,000	7,500	2,500	0	
본인	박공직	우리은행(국내) (1073-801-672244)	주택청약종합저축	2,000	8,000	6,000	0	
배우자	김아내	국민은행 (49780201290555)	KB종합통장-저축예금	300	5,996	5,696	0	
장녀	박장녀	중소기업은행 (28206535702000)	보통예금	6,000	6,000	0	0	
장녀	박장녀	중소기업은행 (28206918501019)	보통예금	4,000	0	0	4,000	

- ▶ ① '종전가액'란이 '0'원인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회신 되어 온 계좌
 - ▶ ② '현재가액'란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이 표시
 - 등록기준일자의 '현재가액'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보유금액과 다를 경우 '일괄저장' 이후 목록에서 해당항목을 직접 클릭하여 '현재가액'(유가증권은 수량, 현재가액)을 수정
 - ▶ ③ 붉은색으로 표시된 계좌는 종전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임 (해약, 기존신고계좌와 불일치, 금융기관회신오류 등)
 - 일괄변동 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현재가액'란이 '0'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므로 목록을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회신된 계좌가 있다면 '0'인 상태로 진행해야 함
-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빨간색으로 표시된 계좌에서 ④  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보임



- ▶ 외국은행 등 회신받을 수 없는 기관의 계좌(외국은행, 비회신 기관 등)
 - 등록기준일자의 실제 보유금액을 확인 후 가액 변경은 목록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 외국은행 등 회신받을 수 없는 기관의 계좌

관계	소유자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탁종류	종전가액 (원)	현재가액 (원)	증가액 (원)	감소액 (원)	비고
본인	홍길동	Bank of America (001221120320)	보통예금	22,711	22,711	0	22,711	
본인	홍길동	공직조합원 (111-101-11221)	출자금동장	5,810	5,810	0	5,810	
본인	홍길동	공직조합원 (111-101-11222)	보통예금	210	210	0	210	

일괄저장

- ▶ 금융정보활용입력 내용의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 후, 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괄저장** 버튼 클릭 시 내용이 저장되고 목록 화면으로 이동됨

※ **해약, 전량매도, 전액상환 계좌는 금융정보활용입력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총괄표로 이동 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함**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 재산신고 > 정치예금
심사관 알람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자금법에 따른 예금 계좌로 신고할 경우, 예금에 신고된 계좌는 삭제해야 중복 신고되지 않으므로 예금에 동일한 계좌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 바람

○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값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10,000	0	0	10,000	변동사유기재
<input type="checkbox"/>	!	배우자	이여왕	(주)KEB하나은행 (123-12345-12)	정치예금	10,000	0	0	10,000	

변동재산

권리명세변경(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체크를 하십시오.)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예탁기관	(주)KEB하나은행
예금종류	정치예금
계좌번호	123-12345-12

해 약(* 선택된 예금(보험)계좌를 해약한 경우 체크하십시오.)

	前 보유액	現 보유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보유액변경 (필수)	10,000(천원) [일천만]원	10,000(천원) [일천만]원	0 (천원)	0 (천원)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보유액이 마이너스인 예금은 채무항목에 신고하십시오

개설일자	2019-02-01
만기일자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특기사항	<input type="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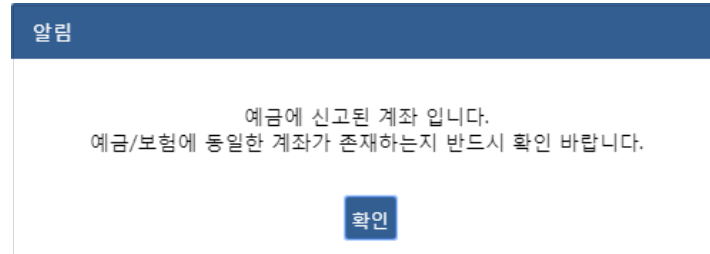
파일첨부

※ [저장] 버튼을 선택 해야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변동취소
저장
작성취소

-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목록의 우측 상단에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기사항을 입력
-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 형태로 입력
-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 “변동사유”란에 해당계좌의 용도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 ▶ 보유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해약”에 체크 후 특이사항 입력(0원과 해약은 다름)
- ▶ 예금 항목에 같은 계좌번호가 존재 할 경우 저장 후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뜬



※ 예금 항목에 동일한 계좌가 있을 경우 중복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예금항목에 신고 된 계좌는 삭제 및 해약 처리해야 함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 백지신탁, 주식매수선택권) 입력방법

★ · 재산신고 · 유가증권(주식 · 국채 · 공채 · 회사채 · 백지신탁 · 주식매수선택권 등)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 금융정보열람 클릭하여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신고 가능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선택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천원)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천원)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31,850	0	0	31,850	변동사유기재
<input type="checkbox"/>	!	본인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KT (현보유량: 500주)	상장주식	13,350	0	0	13,350	변경
<input type="checkbox"/>	!	본인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인터파크 (현보유량: 150주)	상장주식	2,000	0	0	2,000	변경

변동재산

관계	본인
소유자	홍길동
권리종류	상장주식
매탁기관	신한금융투자(주)
계좌번호	512456332145
발행인	KT
종목코드	030200

전량매도(※ 선택된 주식 또는 채권 전량 매도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

보유량 변경	前 보유량	現 보유량	증가량	감소량
	500 (주)	<input type="text" value="500"/> (주)	<input type="text" value="0"/> (주)	<input type="text" value="0"/> (주)
보유액 변경	13,350 (천원) [일천삼백삼십오만]원	<input type="text" value="13,350"/> (천원) [일천삼백삼십오만]원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 계산하기 (등록기준일의 증가 기준으로 입력하십시오.)
※ 필요시 증권거래소시세 조회 를 클릭하여 주식시세 조회 가능

가액변동여부 (필수) 예 아니오

특기사항
※ 백지신탁의 경우 신탁일자, 신탁회사 등을 기재하십시오.

파일첨부 찾아보기...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변동취소 저장 작성취소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 정보제공동의자는 제공된 금융자료가 이상이 없는 경우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변경 및 신규 추가 가능(로그인 초기에 일괄반영에 동의한 경우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으나 반영된 내용의 오류 여부는 반드시 확인 필요)
 -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유가증권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증권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상장주식의 경우 등록기준일('19.12.31.)의 최종거래가격(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변동신고
 - 유가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 MMF,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주가연계증권인 ELS, CMA, MMDA등 간접금융상품은 예금항목으로 신고
 - **추가** 할 경우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이사항을 입력
- ▶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전량매도”에 체크 후 특기사항 입력
- ▶ 종전 신고한 자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수량 및 “現보유액”을 입력(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됨)
 - ※ “現 보유액”란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식시세 계산”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계산 됨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 비상장(상장前, 상장폐지) 주식은 주권의 액면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K-OTC시장의 비상장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를 신고
-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 ▶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괄표의 유가증권항목 **변동사유기재** 버튼을 클릭하여 유가증권항목의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 ▶ 재산공개대상자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에 대해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방법

- ▶ (신고대상 기간) '19.1.1.부터(연도 중 최초 등록한 경우 그 이후부터) 12.31.까지의 거래내역
 - ※ '18.10.2.~'18.12.31. 기간 중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19.12.31.까지의 거래내역
- ▶ (신고방법)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고(영 제5의2제3항)

- ▶ 총괄표를 클릭하면 아래 메시지 창이 나옴. 확인 클릭하여 창 닫은 뒤,

《주식거래내역신고 안내(공적자유리법 제6조의2)》

재산 공개대상자는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주식거래내역(등록 기준일 현재 권역이 없는 경우 포함)**이 있는 경우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총괄표 화면 우측 상단의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클릭하시거나 총괄표의 **유가증권** 권에 있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원금(주요)	총계	658,353	150,618	270,169	538,802
· 매입/보통	· 토지(소유권·저상권·전세권·분양권)(소계)	222,673	45,089	1,673	266,089
· 유가증권	· 신규	· 분인	· 알림	· 23(23)	· 0
· 사인간 채권	· 변동	· 분인	· 3,167	· 0	· 23
· 채무	· 신규	· 분인	· 200(200)	· 0	· 200
· 금 및 백금	· 변동	· 분인	· 0	· 0	· 66,000
· 보석류	· 변동	· 배우자	· 3,699	· 0	· 101,699
· 공동종말예술품	· 변동	· 배우자	· 0	· 1,673	· -
· 회원권	· 권역(소유권·전세(입차)권·모양권)(소계)	· 245,084	· 2,914	· 0	· 247,998
· 지식재산권	· 변동	· 분인	· 박의 무	· 세종특별자치시 도당동 845번지 도평마을1단지 101동 202호 건물 84.98㎡ 중 42.49㎡	· 소유권
· 출자지분	· 권역(소유권·전세(입차)권·모양권)(소계)	· 245,084	· 2,914	· 0	· 247,998
· 출연재산	· 변동	· 분인	· 박의 무	· 세종특별자치시 도당동 845번지 도평마을1단지 101동 202호 건물 84.98㎡ 중 42.49㎡	· 소유권
▶ 총괄표	· 변동	· 배우자	· 김아내	· 세종특별자치시 도당동 845번지 도평마을1단지 101동 202호 건물 84.98㎡ 중 42.49㎡	· 소유권
· 신고내역검증	· 변동	· 배우자	· 김아내	· 세종특별자치시 도당동 845번지 도평마을1단지 101동 202호 건물 84.98㎡ 중 42.49㎡	· 소유권
	· 무등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0	· 0	· 0	· -

- ▶ 총괄표 목록 **주식거래내역신고** 버튼 클릭하여 작성한 후 “저장”클릭

· 재산신고 · **총괄표**

· **주식거래내역신고** **등록**

경처자금법에 따른 경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0	0	0	-	
· 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소계)	· 주식거래내역신고	23,650	36,146	18,650	41,146
· 변동	· 분인	· 박의 무	· KB증권, 하림지주 (원보유량: 0주, 200주 감소)	· 상장주식	· 5,600
· 신규	· 분인	· 박의 무	· KB증권, 하림지주 (원보유량: 200주, 200주 증가)	· -	· 0
· 변동	· 분인	· 박의 무	· -	· -	· 7,260
· 신규	· 무	· 박주진	· -	· -	· 50
· 변동	· 장남	· 박장남	· -	· -	· 0
· 신규	· 장남	· 박장남	· -	· -	· 1,600
· 변동	· 장녀	· 박장녀	· -	· -	· 0
· 신규	· 장녀	· 박장녀	· 미래에셋대우(주), 금덴츠케이투 (원보유량: 50,000주, 50,000주 증가)	· 상장주식	· 0
· 변동	· 차녀	· 박차녀	· SK증권, 경우조명 (원보유량: 0주, 400주 감소), 특기사항(가액변동)	· 비상장주식	· 6,000
· 사인간 채권(소계)	· 0	· 23	· 0	· 23	

채권 입력방법

☞ 재산신고 > 사인간 채권 심사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권)발생사유, 일자,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허위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목이므로 차용증, 원금·이자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함
 ※ 전세권(임차권)은 채권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 항목에 신고해야 함
 ○ (기존채권)변동 시 변동사유, 자금흐름등 기재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10,000	0	0	10,000	
<input type="checkbox"/>	!	배우자	이여왕	이재우 (경기도 하남시 대정로 79-0, 202동 201호 (신장동,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전화번호: 010-1234-8789)		10,000	0	0	10,000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전액환수(※ 선택된 채권 전액을 환수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

채권액변경 (필수)	前 채권액	現 채권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10000(천원) [일천만원]	10,000(천원) [일천만원]	0(천원)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기재하십시오
 *보유액이 마이너스인 예금은 채무항목에 신고하십시오

발생일자: 2017-09-01

만기일자 (필수): 2023-09-01

주소 (필수): 도로명 12945 주소찾기
 경기도 하남시 대정로 79-0 202동 201호 (신장동, 대명강변타운아파트)

가액변동여부 (필수): 예 아니오

변동사유 (필수):

파일첨부: 찾아보기...
 ※ [저장] 버튼을 선택 해야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변동취소
저장
작성취소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 타인의 주택,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사인간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 항목에 등록
-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보유채권을 전액환수 했을 경우 전액환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채무 입력방법

☞ 재산신고 > 채무(건물/토지·금융·사인간)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 [금융정보알림](#) 클릭하여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신고 가능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임대) 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해야 함

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선택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증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62,000	0	0	62,000	
<input type="checkbox"/>	①	본인	홍길동	국민은행 (1124512345612)	금융기관채무	60,000	0	0	60,000	변경
<input type="checkbox"/>	①	본인	홍길동	신한은행 (4512456851231)	금융기관채무	2,000	0	0	2,000	변경

변동채무

관계	본인
채무자	홍길동
채무종류	금융기관채무
대출기관	국민은행
계좌번호	1124512345612

전액상환(※ 선택된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 체크 하십시오.)

가액변경 (필수)	前 채무액	現 채무액 (필수)	채무증가액	채무감소액
	60,000 (천원) [육천만]원	<input type="text" value="60,000"/> (천원) [육천만]원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발생일자	2011-03-01			
만기일자	<input type="text"/> 만기일자삭제			
변동사유	<input type="text"/>			

파일첨부 [찾아보기...](#)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변동취소](#) [저장](#) [작성취소](#)

-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 한 경우, 먼저 건물항목에 소유권으로 등록한 뒤 보증금은 채무종류 '건물임대채무' 선택하여 등록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 채무는 등록하지 않음)
-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제공된 금융자료가 이상이 없는 경우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변경 및 신규 추가 가능 (로그인 초기에 일괄반영에 동의한 경우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으나 반영된 내용의 오류 여부는 반드시 확인 필요)
 -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유가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채무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에 대해 채무액이 변경된 경우 “現채무액”에 기재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추가** 할 경우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 ▶ 보유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전액상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별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격을 '0원'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계속 보유 중인 경우(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등록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변동사항 신고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5,000	0	0	5,000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radio"/>	배우자	이여왕	백금, 24K, 100g	백금	5,000	0	0	5,000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종류	백금
합량	24

매도(※ 선택된 재산을 매도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

보유량 변경	前 보유량	現 보유량(필수)	증가량	감소량
	100(g)	100× (g)	0 (g)	0 (g)
가액 변경	前 가액	現 가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5,000(천원) [오백만원]	5,000 (천원) [오백만원]	0 (천원)	0 (천원)

現 실거래가격: 0

가액변동여부 (필수): 예 아니오

변동사유 (필수):

파일첨부: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금, 백금), 합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량의 증감 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등록기준일의 금 시세를 조회하여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보석류 입력방법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증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12,000	0	0	12,000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radio"/>	배우자	이여왕	다이아몬드 (1캐럿, 흰색)	다이아몬드	12,000	0	0	12,000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종류	다이아몬드
크기	1캐럿
색상	흰색

매도(※ 선택된 재산을 매도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

가액 변경	前 가액	現 가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12000(천원) [일천이백만원]	12000(천원) [일천이백만원]	0(천원)	0(천원)
現 실거래가격	<input type="text" value="0"/>			
가액변동여부(필수)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변동사유(필수)	<input type="text"/>			

파일첨부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재산신고 · 골동품 및 예술품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당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격을 '0원'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30,000	0	0	30,000	
<input type="checkbox"/>	1	배우자	이여왕	동양화 (네이처, 50*50, 0100, 1950년대)	동양화	30,000	0	0	30,000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종류	동양화
품명	네이처
크기	50*50
작가	0100
제작연대	1950년대

매도(※ 선택된 재산을 매도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

가액 변경	前 가액	現 가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30,000(천원) [삼천만]원	30,000 × (천원) [삼천만]원	0 (천원)	0 (천원)
現 실거래가격	0 한국고미술협회			
변동사유 (필수)				

파일첨부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도자기, 회화 등)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회원권 입력방법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골프·텔스·콘도미니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증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6,000	0	0	6,000	
<input type="checkbox"/>	!	배우자	이여왕	레이크힐스제주골프클럽 (M-09-1234)	골프	6,000	0	0	6,000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종류	골프
발행인	레이크힐스제주골프클럽
소재지	[국외] [주소찾기] [] - [] [] 등 [] 호 ([] , []) ※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기재하십시오. ※ 해외거주자일 경우 국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검색이 안되는 보안 시설인 경우 기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회원권 번호	M-09-1234

매도(※ 선택된 재산을 매도한 경우 체크 하십시오.)

가액 변경 (필수)	前 가액	現 가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6,000(천원) [육백만원]	[] 6,000 (천원) [육백만원]	[] 0 (천원)	[] 0 (천원)
現 실거래가격	[] 0 !			
가액변동여부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변동사유 (필수)	가액변동 없음 !			

파일첨부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골프회원권 가액 신고 방법

- 신규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매입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
-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 (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증감분 신고하고, 변동이 없을 시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 ▶ 콘도미니엄의 경우 부동산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건물이 아닌 회원권으로 신고
- ▶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매도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재산신고 · 지식재산권(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등)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소득 원인행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등 지식재산권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 등록번호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명세 기재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	-	-	-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radio"/>	배우자	이여왕	특허권, 스마트폰 핸드폰케이스 (현소득금액:10,000천원)	특허권	-	-	-	-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종류	특허권
권리명세	스마트폰 핸드폰케이스

소멸(※ 선택된 재산의 소유권 상실의 경우 체크 하십시오.)

가액 변경	前 소득금액	現 소득금액(필수)
	10,000(천원) [일천만원]	<input type="text" value="10,000"/> (천원)
변동사유 (필수)	<input type="text" value=""/>	

파일첨부 찾아보기...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 재산신고 · 출자지분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합명·합자·유한회사에 새로 출자했거나 이미 신고한 회사의 출자가액, 출자지분이 변동된 경우 신고하고, 당해 연도 매출액 변동사항을 신고
 ○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이면 '주식'항목에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비분으로 신고

!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감소액		
계						12,000	0	0	12,000	
<input type="checkbox"/>	!	배우자	이여왕	코리아전력, 출자가액: 12,000천원, 지분비율: 0%(3.3% 감소), 연간매출액: 1,800,000천원		12,000	0	0	12,000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출자자	이여왕
회사명	코리아전력
소재지 (필수)	도로명주소: 06083 주소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1길 - [] 동 [] 호 ([삼성동] , [씨에이치엠빌딩]) ※ 해외거주자일 경우 국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검색이안되는 보안 시설인 경우 기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이대표
영업종류	전기회사
설립일	2011-12-01
자본금	400,000 (천원) (사역)원

소멸(※ 선택된 출자지분 소멸의 경우 체크 하십시오.)

	종전	현전
출자지분 (필수)	3 %	[3] (%)
출자가액 (필수)	12,000 (천원) (일천이백만)원	12,000 (천원) (일천이백만)원
회사연간매출액 (필수)	1,800,000 (천원) (일십팔억)원	1,800,000 (천원) (일십팔억)원
변동사유 (필수)	[] ※출자일자 출자경위, 그밖에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 사유란에 기재하십시오.	

파일첨부 찾아보기...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변동취소
저장
작성취소

-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출자한 지분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멸”에 체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 재산신고 • 출연재산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에 새로 출연하거나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신고(출연재산액 신고)
 ○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
 ※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제외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연구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감소액		
계						-	-	-	-	
<input type="checkbox"/>	1	배우자	이여왕	아나바다, 출연재산: 20,000천원, 보유직위: 이사		-	-	-	-	

변동재산

관계	배우자
소유자	이여왕
법인명칭	아나바다
보유직위	이사
대표자	박대표
목적사업	환경살리기
소재지	<input type="text" value="도로명주소"/> <input type="button" value="주소찾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input type="text"/> 동 <input type="text"/> 호 (<input type="text" value="논현동"/> , <input type="text" value="성보빌딩"/>) ※ 해외거주자일 경우 국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검색이안되는 보안 시설인 경우 기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소멸(※ 선택된 재산의 소멸의 경우 체크 하십시오.)

	前 출연재산	총 출연재산 (필수)	증감 출연재산
출연재산 변경	20,000 (천원) (이전만)원	<input type="text" value="20,000"/> (천원)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변동사유 (필수)	<input type="text"/>		

※출자일자 경위 등 변동 사유와 자금출처 및 사용처를 기재하십시오.

파일첨부

※ [저장] 버튼을 선택 하면 해당 파일이 저장 됩니다. (tif, jpg, jpeg, gif, png, bmp, pdf, zip 파일만 가능합니다)

-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 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 출연재산이 소멸된 경우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 변동사항을 입력 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 변동 신고한 재산을 변동취소 할 경우 **변동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원상태로 초기화 됨

신고내역검증

재산신고, 신고내역검증

총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단계로 진행하시기 전에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서 기계적으로 검증한 사항으로 사실여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 내용을 출력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 메뉴 중 「파일」 인쇄 미리보기,에서 「페이지에 맞게 축소」를 선택하여 화면조절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친족별 신고 금액

관계	성명	부동산경보동의	금융경보동의	신고 총전금액	신고 증가금액	신고 감소금액	신고 총금액
본인	홍길동	동의	동의	193,692	164,156	128,692	229,156
배우자	김아내	동의	동의	176,842	107,396	64,000	220,238
장남	박장남	동의	동의	10,000	12,500	10,000	12,500
장녀	박장녀	동의	동의	2,000	20,786	0	22,786
차녀	박차녀	동의	동의	6,000	1	6,000	1

▲ 신고·조회·열람·활용입력 정보 비교현황

구분	재산항목	신고내용	확신내용	조회	열람일시	활용입력일시
부동산	토지	6 건	4 건	1 확인	2019-06-28 13:45:02	
	건물	3 건	4 건	확인	2019-06-28 15:31:15	
금융	예금/보험	8 건 (39,716천원)	6 건 (39,716천원)	확인	2019-06-28 14:06:35	2019-11-25 14:11:14
	유가증권	7 건 (36,546천원)	3 건 (34,546천원)	확인	2019-07-01 05:58:07	2019-11-21 16:20:19
	채무	3 건 (103,000천원)	1 건 (90,000천원)	확인	2019-06-28 14:07:29	2019-11-21 16:20:29

※ 건수와 금액은 단순비교값으로 신고 금액이 정확하면 별도의 확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친족 주소지의 소유권 및 전세권 미신고 여부 확인

수정

※ 아래 주소지가 미등록 상태입니다. 등록대상 재산인 경우 건물재산(소유권, 전세권)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재산이 아닌 경우(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친족사항의 관리형태란에 관리형태를 정확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관리형태	관계	성명
----	------	----	----

▲ 본인 및 친족 주소지 이외의 소유 건물에 대한 타인 임대여부 등 확인

수정

※ 아래 주소지가 채무에 미등록 상태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임대나 공실 등인 경우 해당 건물의 변동사유란에 '○○○에게 무상임대', '공실' 등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주소
----	----	----

▲ '채무'항목에 '토지임대채무'로 등록된 지번에 대한 토지정보 확인

수정

※ 아래 토지정보가 미등록 상태입니다. 등록대상 재산인 경우 토지재산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임대채무에 등록된 임대토지를 매도한 경우 총괄표의 채무항목에서 토지임대채무를 전액환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주소
----	----	----

▲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등록된 지번에 대한 건물정보 확인

수정

※ 아래 건물정보가 미등록 상태입니다. 등록대상 재산인 경우 건물재산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임대채무에 등록된 임대건물을 매도한 경우 총괄표의 채무항목에서 건물임대채무를 전액환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주소
----	----	----

▲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확인

수정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계	성명	재산항목	가액(천원)
----	----	------	--------

▲ 고지거부 재심사자 미신청 확인

수정

※ 고지거부 재심사 미신청자 내역입니다.

관계	성명	고지거부신청일	고지거부적용시작일	고지거부적용종료일
----	----	---------	-----------	-----------

이전

다음

■ 신고한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비교하여 내용을 사전 점검하는 기능

※ 이 화면의 신고한 내용은 단순착오 및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점검한 내용으로 등록의무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다음단계로 이동

◎ 신고·조회·열람·활용입력 정보 비교현황

- ▶ 신고한 내용과 회신 받은 내용을 비교하여 부동산은 건수가 차이 날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해주며, 금융은 건수와 총액을 비교하여 차이 날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함
- ▶ 부동산, 금융정보의 열람일시를 보여주며, 금융의 경우 활용입력 일시도 보여줌
- ※ 열람, 활용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보여짐

- ① **확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자료와 조회자료 목록을 비교할 수 있음

재산항목 열람 - 토지					○ 신고자료 목록					○ 조회자료 목록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소유자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자수					
신규	본인	홍길동	111 121.00㎡ 중 1.00㎡ (출면적 12 1.00㎡ 증가, 지분면적 1.00㎡ 증가)	지상권	홍길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199-1번지	임야	1,323.00	1					
변동	본인	홍길동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199-1번지 1,323.00㎡ 중 1,323.00㎡	소유권	홍길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산18-3번지	임야	2,447.00	1					
변동	본인	홍길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1번지 오송바이오 융복합산업지구 1동 1호 0.00㎡ (0.00㎡ 감소)	분양권	김아*	세종특별자치시 강군면 대교리 산 3-2번지	임야	2,084.00	1					
변동	본인	홍길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리 1231번지 241.00㎡	분양권	김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강군면 봉안리 산 38-36번지	임야	6,568.00	1					
신규	배우자	김아내	111 121.00㎡ 중 1.00㎡ (출면적 12 1.00㎡ 증가, 지분면적 1.00㎡ 증가)	지상권										
변동	배우자	김아내	세종특별자치시 강군면 대교리 산 3-2번지 0.00㎡ 중 0.00㎡ (출면적 2,084.00㎡ 감소, 지분면적 2,084.00㎡ 감소)	소유권										
신규	배우자	김아내	세종특별자치시 강군면 대교리 산 3-2번지 2,084.00㎡ 중 2,084.00㎡ (출면적 2,084.00㎡ 증가, 지분면적 2,084.00㎡ 증가)	소유권										
신규	차녀	박차녀	111 121.00㎡ 중 1.00㎡ (출면적 12 1.00㎡ 증가, 지분면적 1.00㎡ 증가)	지상권										

◎ 본인 및 친족 주소지의 소유권 및 전세권 미신고 여부 확인

- ▶ 본인 또는 친족입력 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라고 신고 되어 있는데 “건물항목”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누락이 맞는 경우 “건물항목”으로 이동하여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본인정보입력 혹은 친족정보입력에서 변경
-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본인 및 친족 주소지 이외 소유 건물에 대한 타인 임대여부 등 확인

- ▶ “건물항목”에 신고 된 건물 중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의 거주지 주소가 아니며, ‘채무’ 항목의 ‘건물임대채무’도 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누락이 맞는 경우에는 “채무항목”으로 이동하여 에서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인 경우 “건물항목”에서 해당건물의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 기재
-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 ‘채무’항목에 ‘토지, 건물 임대채무’로 등록된 지번에 대한 토지·건물정보 확인

- ▶ “채무항목”에 토지임대채무 및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한 주소가 “토지항목” 또는 “건물항목”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잘못된 사항이 맞으면 누락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항목에서 추가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채무항목”에서 “전액상환”을 체크하여 수정신고

◎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확인

- ▶ 재산 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 금융관련부서, 금융위원회 4급이상 등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만 해당하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백지신탁 신고 진행

◎ 고지거부 재심사자 미신청 확인

- ▶ 고지거부 만료일이 2020.12.30.까지인 대상자로서 고지거부 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시되며, 2020.3.2.까지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

3-6. 변동요약서 작성

☞ , 재산신고 , **재산변동 요약서** ※ 실거래액으로 계산하여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괄표 보기 재산변동 요약서 다시가져오기

구분	재산증가		재산감소	
	금액(천원)	변동사유	금액(천원)	변동사유
01.토지	-		-	
02.건물	200,000	건물매입	(▽24,094)	전세권해지
03.자동차 등	-		-	
04.현금	-		-	
05.예금	22,730	예금	(▽2,000)	예금
06.정치자금	-		-	
07.유가증권	-		-	
08.채권	75,000		(▽5,000)	채권만태
09.채무	25,000		(▽4,158)	
10.금	21,900	매입	-	
11.보석	-		-	
12.골동품	100	매입	-	
13.회원권	-		-	
14.지식재산권	-		-	
15.출자지분	5,000		(▽2,000)	출자분감소
16.출연재산	100,000	신규기관출연	-	
합계	총재산증가		총재산감소	
	- 가액변동 증가	449,730	- 가액변동 감소	(▽37,252)
	- ① 순재산 증가	-	- ② 순재산 감소	(▽24,094)
(순재산)③ 변동금액(①-②)	449,730 (천원)			
※ ④재산 증가, 감소 사유(필수)	건물 매도			
⑤ 본인소득(필수)	45,000 천원 [사천오백만] 원			
⑥ 본인외소득	본인외소득자수 0명 ▾ 본인외소득 50,000 (천원) [오천만] 원			
(⑤+⑥) 총소득	95,000 (천원) [구천오백만] 원			

- ▶ 총괄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변동요약서의 항목별 변동금액을 확인
 -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액이 있는 경우 실거래액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 있음
- ▶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란에 변동사유내용 입력
- ▶ 순재산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 대표 사유를 "순재산증가 또는 감소사유"에 입력

▶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소득은 세전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하고,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 변동요약서 작성완료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변동요약서 작성 후 총괄표에서 수정한 재산항목이 있을 경우 **재산변동 요약서 다시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동요약서를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모든 작업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 순재산 변동비율이 총소득 대비 $\pm 70\%$ 이상이거나, 이전 신고서의 순재산 변동액 대비 $\pm 100\%$ 이상일 경우 나오는 팝업으로, 이상이 없다면 확인 클릭하여 진행, 이상 있을 경우 취소 후 신고서 수정

알림

순재산 변동액이 총소득 대비 116.17% 증가 하였습니다.
이번 신고서의 순재산 변동액이 이전 신고서의 순재산 변동액 대비 -1630.07% 감소 하였습니다.

입력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자릿수나 원단위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클릭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확인 **취소**

3-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 재산신고 · 공개목록작성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목록에 작성된 내용은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 변동사유란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화면(재산등록)으로 이동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단, 변동사유란은 수정가능)

공개목록작성

공개목록 다시가져오기

출력 (단위: 천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공직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증가액 (실거래가격) / 감소액 (실거래가격)		현재가액	변동사유
▶ 토지 (소계)							
본인	임야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0.00㎡ (5,000.00㎡ 감소)	22,100	0	22,100	0	
▶ 건물 (소계)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두산위브아파트 건물 6 8.48㎡ 중 68.00㎡	594,000	36,000	0	630,000	
배우자	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개나리아파트 건물 84.84㎡ 중 84.00㎡	153,177	0	21,666	131,511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본인	자동차	10년식 그랜저 배기량(2,359cc)	20,000	0	2,000	18,000	
배우자	자동차	15년식 제네시스 배기량(5,038cc)	38,000	0	3,000	35,000	
▶ 현금 (소계)							
배우자	-	현금	15,000	0	0	15,000	
▶ 예금 (소계)							
본인	-	국민은행 5,000(500 감소), 신한은행 6,480(1,520 감소), 우리은행 22,100(12,100 증가)	23,500	27,100	17,020	33,580	변동사유기재
배우자	-	NH투자증권 0(1,000 감소), 국민은행 6,000(600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4,000(2,000 감소)	32,400	3,400	5,800	30,000	
부	-	국민은행 0(9,900 감소), 농협중앙회 0(4,800 감소)	14,700	0	14,700	0	
장남	-	우리은행 0(6,500 감소)	6,500	0	6,500	0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소계)							
배우자	-	(주)KEB하나은행 10,000	10,000	0	0	10,000	변동사유기재
▶ 증권 (소계)							
			31,850	2,355	675	33,530	변동사유기재

- ▶ 공개목록작성 팝업을 참고하여 '변동사유'란 입력 후 **저장** 클릭
 - ※ '변동사유'란은 모두 빈칸으로 나타나며 등록의무자가 필요한 경우 항목별 사유를 직접 기재
-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처리됨
- ▶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

- ▶ 공개목록 작성 중 내용이 틀린 경우는 총괄표의 해당항목을 수정한 후 **공개목록 다시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재산항목으로 재생성
- ▶ **출력** 버튼 클릭 하여 공개목록 출력 가능
-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후 다음 **다음** 클릭
 - ※ 공개목록은 신고서제출 후 관보에 게시되니 반드시 내용 확인
 - ※ '변동사유'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

3-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STEP.01 본인정보 > STEP.02 친족정보 > STEP.03 총괄표작성 > STEP.04 변동요약서 > STEP.05 공개목록작성 > **STEP.06 신고서제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라인차트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2018 2018 2019

신고서출력

재산등록신고서	본인 보관용 신고서 출력	출력
변동요약서	본인 보관용 변동요약서 출력	출력
공개목록	관보(공보)에 게재되어 공개되는 내용 출력	출력

신고서 수정
 제출기한내에는 별다른 절차없이 신고내용을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출력
 접수증은 출력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 ▶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 고지거부 허가신청 하였으나 "심사중"인 경우 신고서 제출할 수 없음
 - ※ 해당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후 필요 시 접수증 출력
 - ※ 접수증 출력하지 않아도 제출완료 되며, 제출 후에도 신고서 조회에서 출력 가능
- ▶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메인화면에서도 제출여부 확인 가능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 › 소속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 신고서 : 제출완료
- › 등록기준일 : 2019.12.31.
- › 제출완료일자 : 2020.02.25

재산변동신고서(경기변동) 신고서수정

- ›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기타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출완료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 · 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PETI 공직윤리시스템		마이페이지		재산신고	주식백지신탁	취업심사	게시판			
마이페이지		홈 > 마이페이지 > 제출신고서 조회								
· 마이페이지	번호	신고서	신고구분	등록기준일	소속	직급	직위	신고일자	상세보기	접수증출력
· 신고서조회	2	반동	정기변동	2019-12-31	인사혁신처	4급	과장	2020-02-25		
· 제출신고서조회	1	최초	신규	2019-09-01	인사혁신처	4급	과장	2019-10-21		
· 재산변동요약서조회										
· 공개목록조회										
· 연도별변동흐름조회										
· 소명서관리										
· 보완신고서 관리										

- ▶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 ▶ 과거에 신고한 모든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접수증 출력메뉴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가능
- ▶ 제출한 신고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 상세보기 메뉴 클릭하면 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내용 조회 가능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PETI 공직자윤리시스템' (PETI Public Asset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마이페이지', '재산신고', '주식백지신탁', '취업심사', and '계시판'. The '마이페이지' (My Page) section is active, displaying a sidebar menu with options like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조회', and '재산변동요약서조회'.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홍길동님 환영합니다.' (Welcome Mr. Hong Gildong) message with details: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서: 제출완료, 등록기준일: 2019.12.31, 제출완료일자: 2020.02.25. A prominent '신고서수정' (Report Modification)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is, there are three charts: '연도별 재산총액 변동(최근 5회)' (Annual Total Asset Change), '항목별 재산변동' (Item-wise Asset Change), and '보완신고' (Supplemental Report). The '보완신고' section shows '심사처분결과 (최근 3회)' (Review Disposition Results) with a table indicating '조회 자료가 없습니다' (No search results).

▶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메인화면 **신고서수정** 클릭

- 신고서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를 입력하고 수정요청

※ 재산등록 신고기간중(1.1.~3.2.)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 하지만, 신고기간 만료이후(3.3.~3.12.)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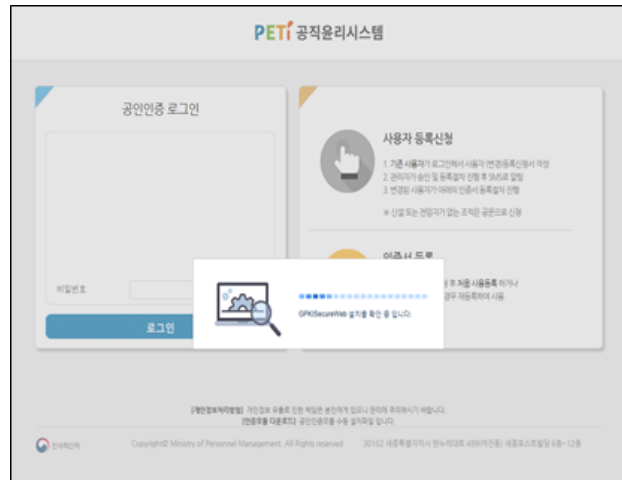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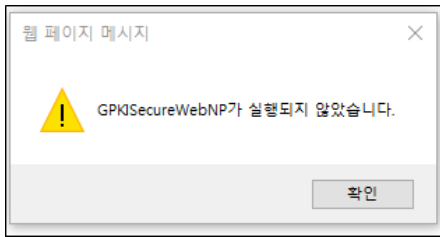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연번	자주 발생하는 질의 내용(FAQ)
1	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GPKISecureWebNP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2	PETI 로그인 시 인증서 로그인 선택화면에서 저장매체 이미지와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3	Chrome에서 PETI 접속 시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면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4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처리방법은?
5	총괄표 작성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6	총괄표 작성에서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7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의 신고 방법은?
8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9	총괄표 작성 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전세권 미신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10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11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신고서 수정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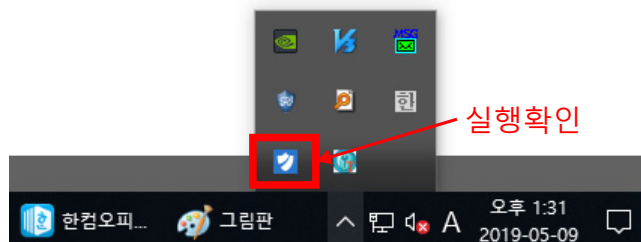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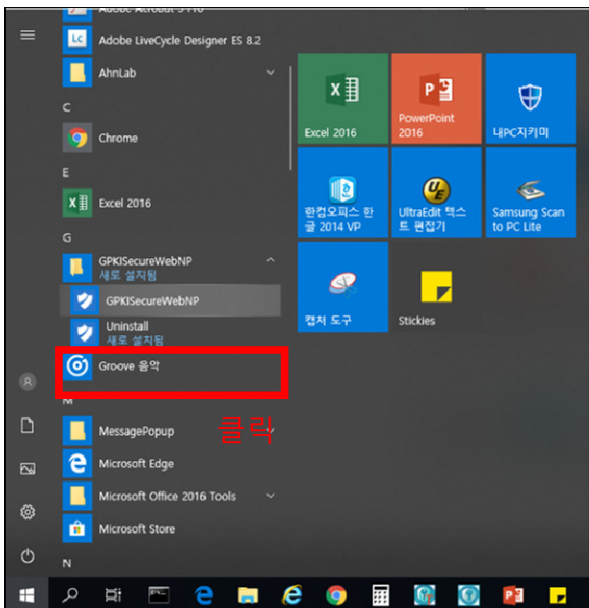
1. PETI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클릭하면, “GPKISecureWebNP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 오류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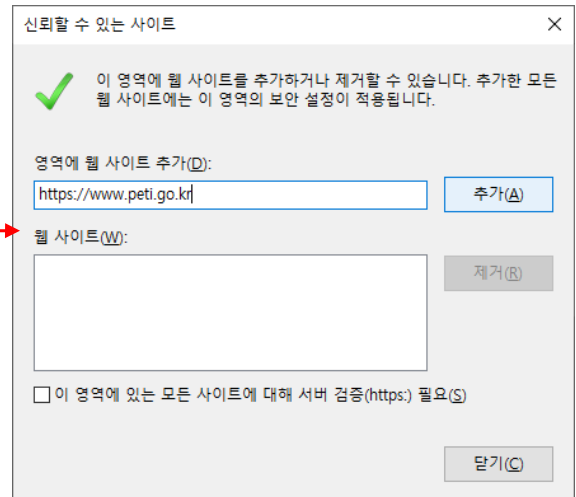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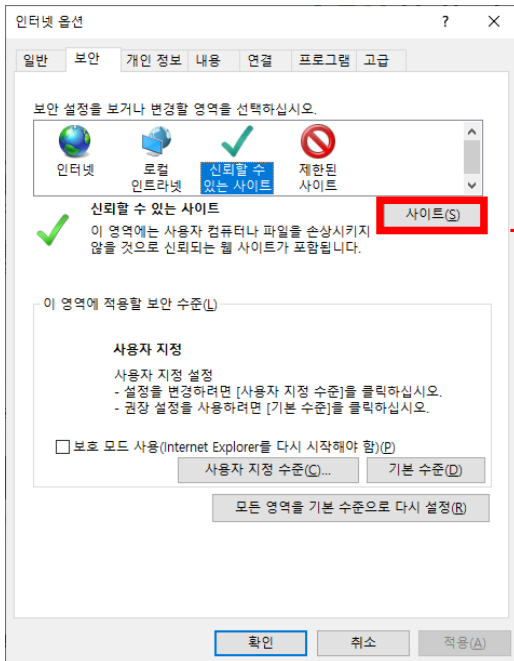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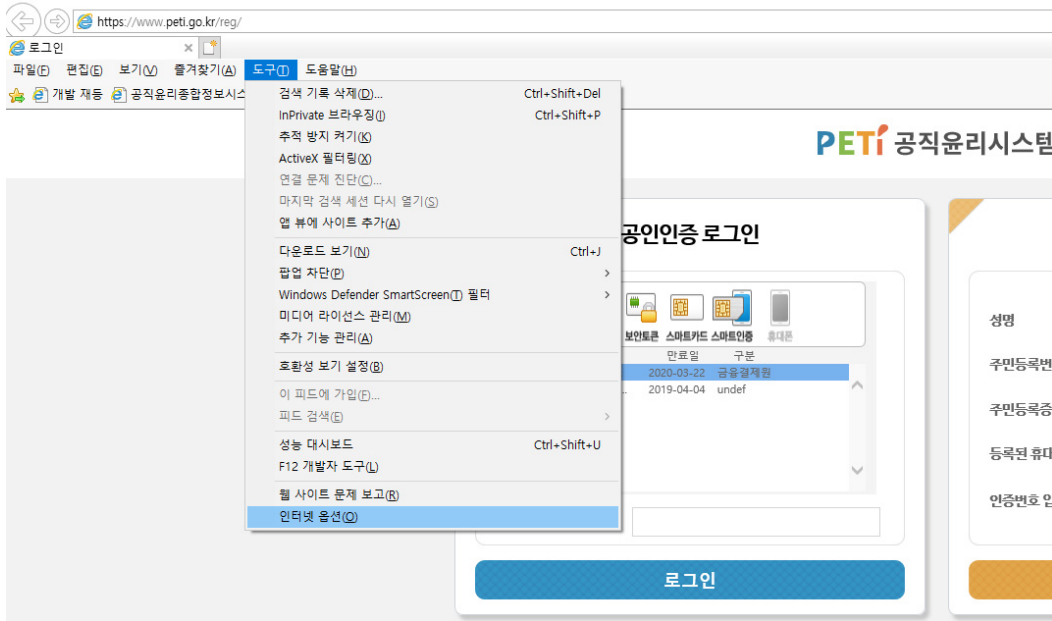
□ 해결방안

1)GPKISecureWebNP가 실행 중이지 않는 경우



1. 시작버튼 클릭 하여 설치된 GPKISecureWebNP를 실행
2. 작업표시줄 트레이에 정상 실행되는 것 확인
3. 공직윤리시스템 재접속

2)GPKISecureWebNP가 실행 중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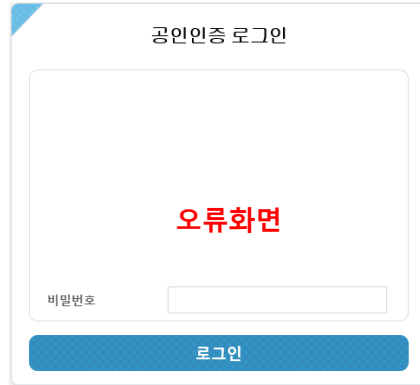


1. IE >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petigo.kr" 추가 되어 있는지 확인
2. IE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 클릭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petigo.kr"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
3. 위의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에 "127.0.0.1, https://127.0.0.1" 등 "127.0.0.1"이 추가 되어 있으면 제거 (IE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추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상 설치 및 동작 하지 않은 경우 확인 할 것)
4. 위와 같이 조치했음에도 프로그램 실행 중임에도 재설치 메시지 표시 되는 현상 계속 발생할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 이용하시거나" SMS 휴대전화 로그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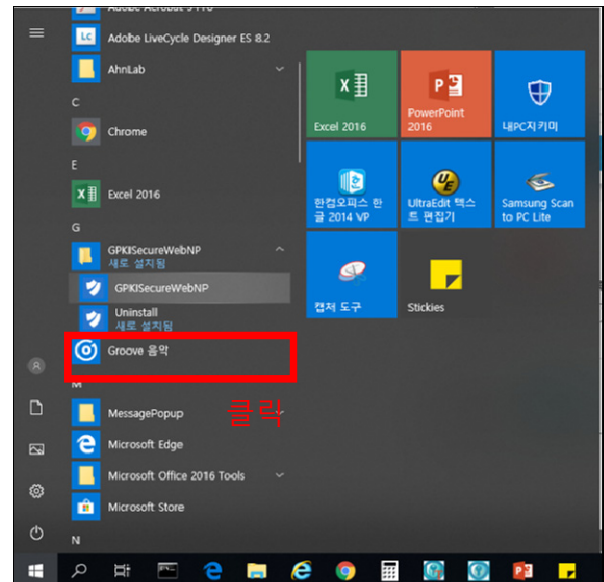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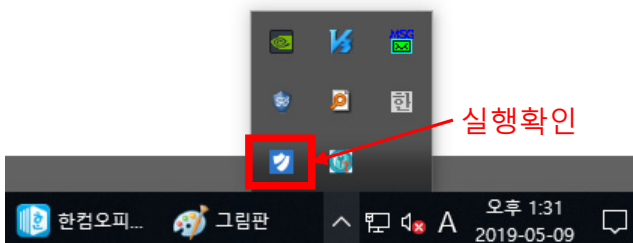
2. PETI 로그인 시 인증서 로그인 선택화면에서 저장매체 이미지와 컴퓨터에 저장된 인증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1) 저장매체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오류화면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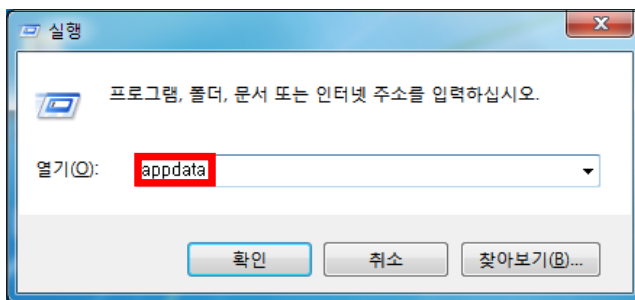
1. 그림과 같이 인증서 저장매체 선택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GPKI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는지 확인
2. 작업표시줄 트레이에 정상 실행되는 것 확인 후 그림과 같이 GPKI프로그램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면
3. 시작버튼 클릭 하여 설치된 GpkiSecureWebNP를 실행
4. 공직윤리시스템 재접속
5. 프로그램 실행 중임에도 동일 현상 계속 발생할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 이용하거나 " SMS 휴대전화 로그인"을 이용

2) 저장매체 아이콘은 표시되나, 인증서 목록이 보이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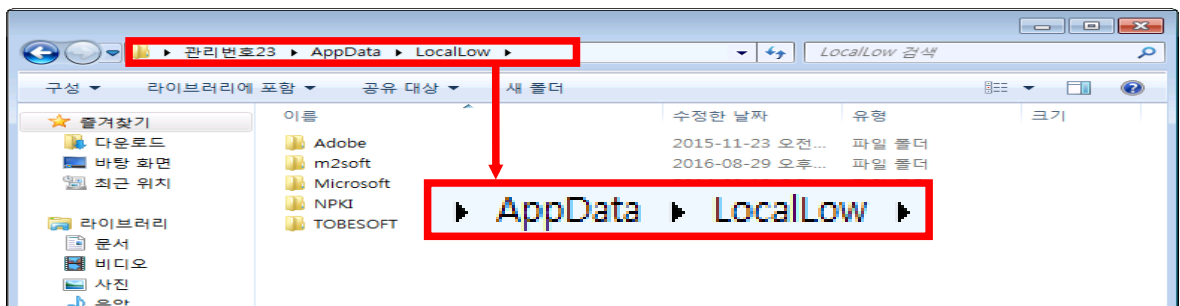


○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또는 공인인증서(NPKI) 저장위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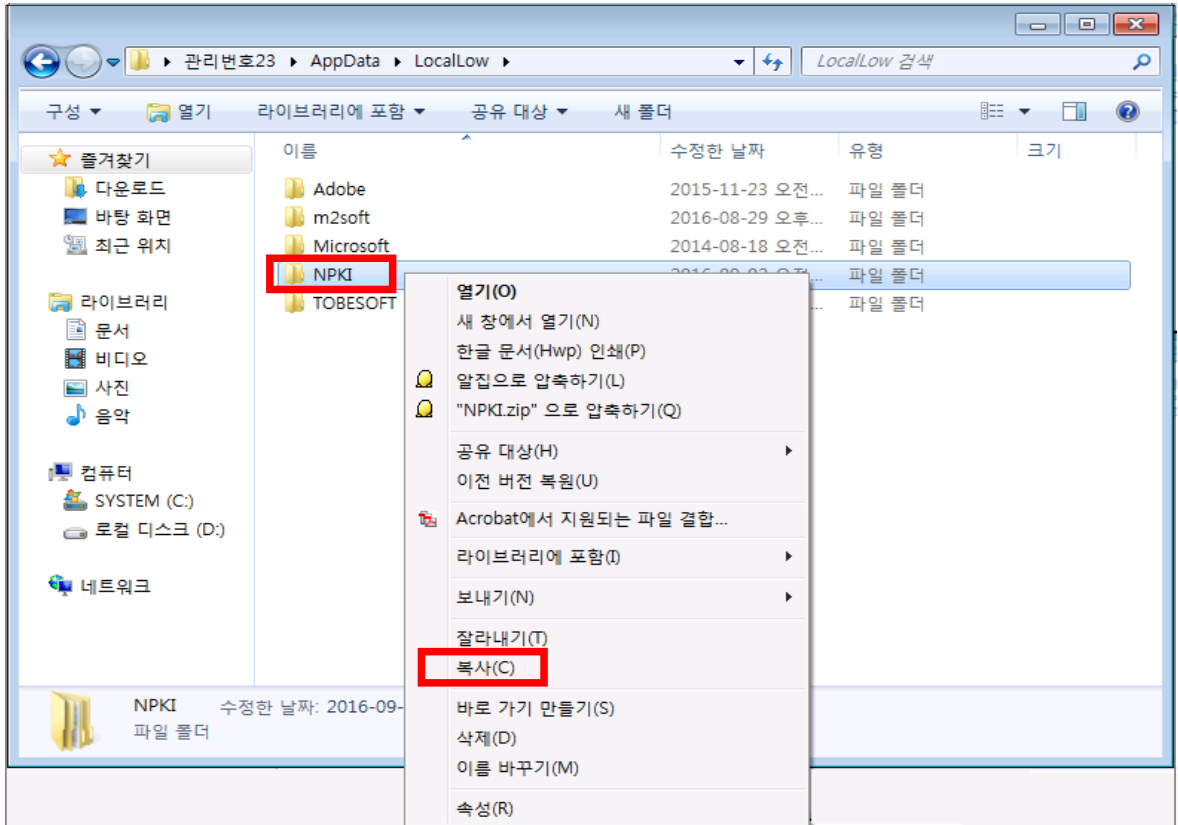
1. 키보드의 [윈도우]버튼과 [R]버튼을 동시에 클릭
2. 실행 창에 'AppData'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3. [AppData]→[LocalLow]를 순서대로 더블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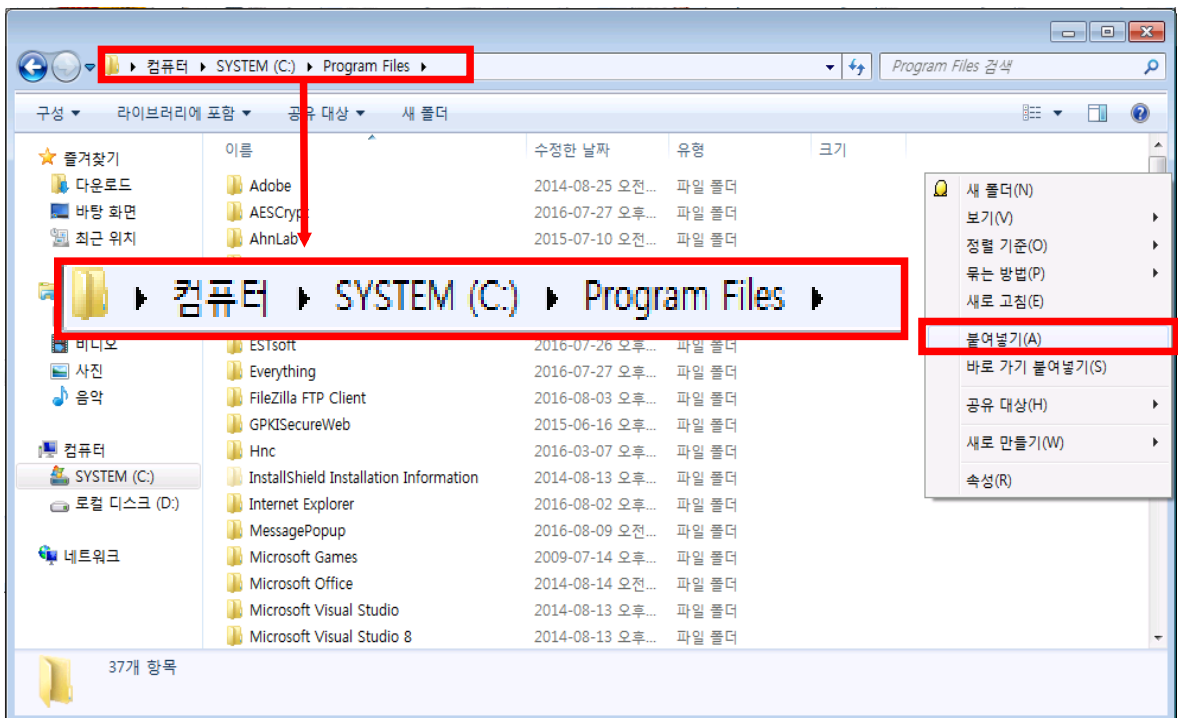


4. [NPKI] 폴더를 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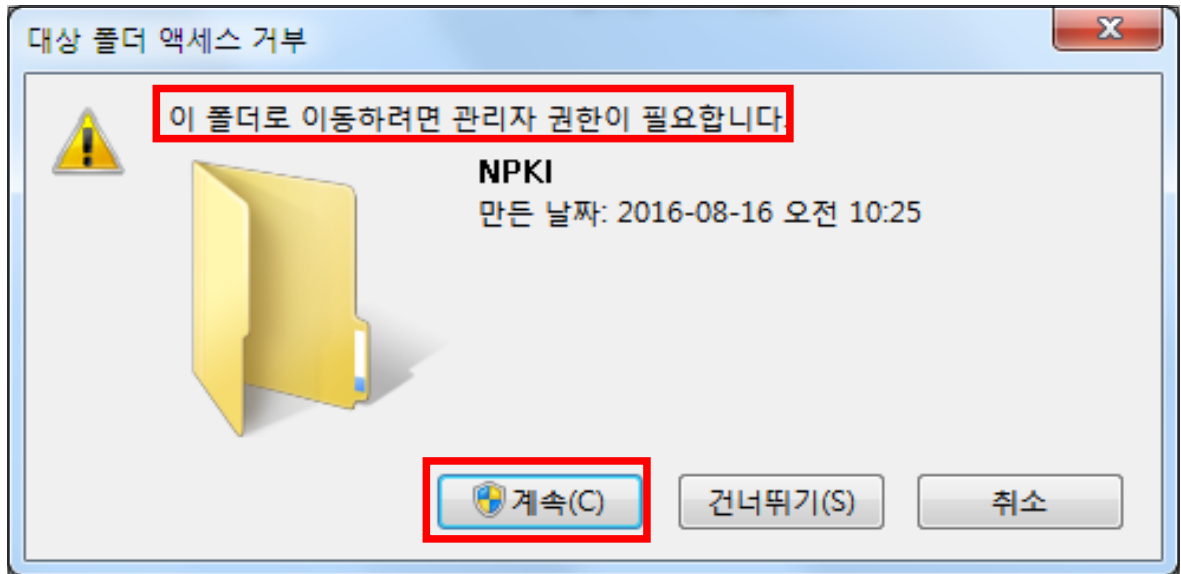


5. 복사한 폴더를 [C:]→[Program Files]에 붙여넣기

※ Program Files와 Program Files(x86) 폴더가 있을 경우 양쪽에 붙여넣기



6. '이 폴더로 이동하려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팝업 시 [계속]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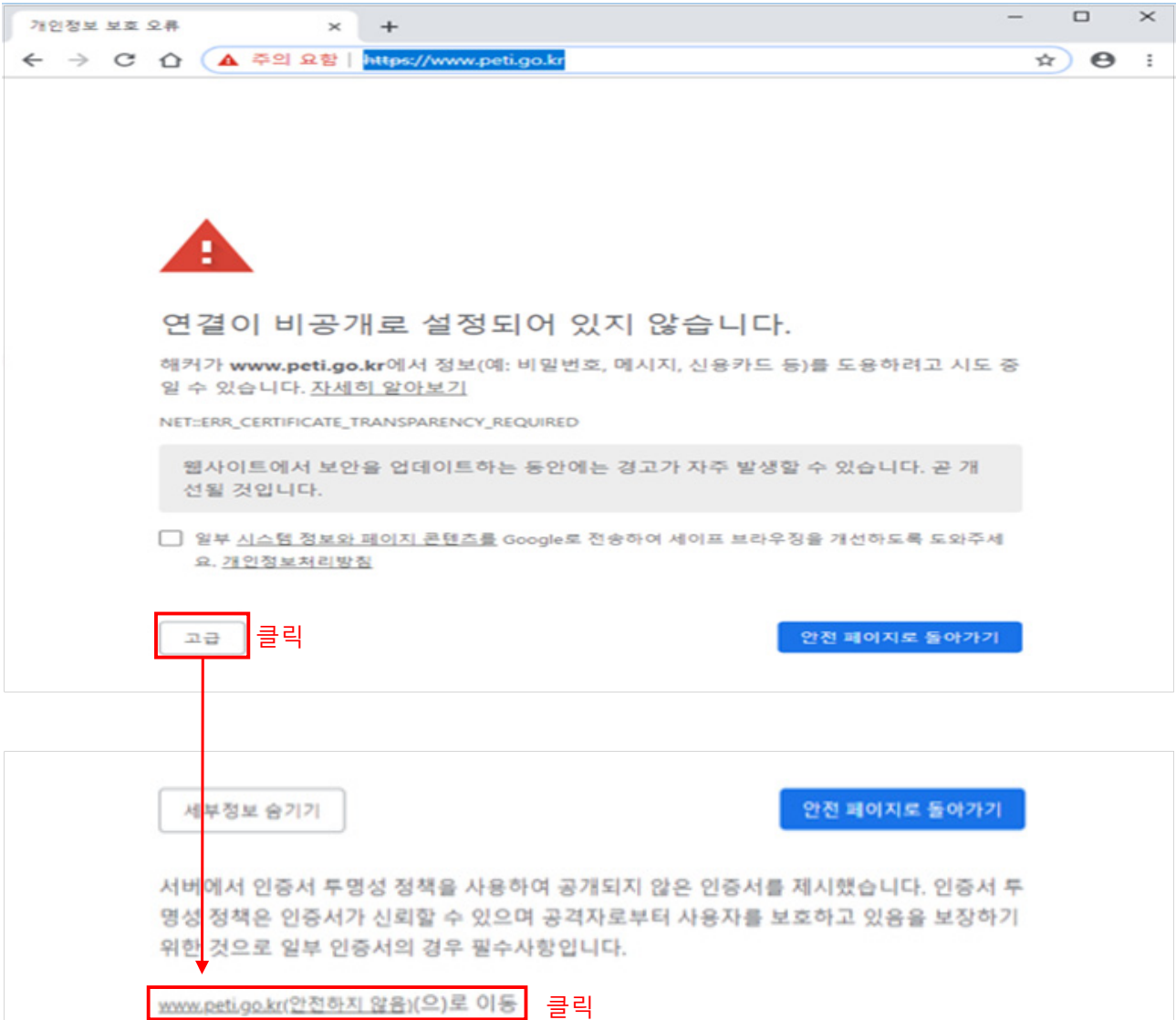


7.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 접속하여 [인증서 선택] 창에 표시되는 인증서 확인



3. Chrome에서 PETI 접속 시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면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정상적인 SSL통신을 하고 있으나 크롬의 인증서 정책에 따라 인증서의 암호화 방식의 차이로 표시되는 화면고급 단추를 클릭하면 표시되는 화면에서 해당 사이트 링크 'www.peti.go.kr(안전하지 않음)(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정상적인 화면으로 이동



1. 고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2. 'www.peti.go.kr(안전하지 않음)(으)로 이동'을 클릭
3.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4.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처리방법은?

등록의무자 본인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정보제공동의자일 경우

1. 변경 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제출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에서 철회서 제출 가능

2.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3. 변경 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서"제출

○ 정보제공동의자가 아닐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친족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정보제공동의자일 경우

1. 변경 전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철회서"를 제출 후 "처리상태"가 "철회"로 완료되었는지 확인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에서 철회서 제출 가능

2.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 [친족정보변경]에서 직접 수정

3. 친족의 변경된 이름(또는 주민등록번호)으로 "정보제공동의서"제출

○ 정보제공동의자가 아닐 경우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 [친족정보변경]에서 직접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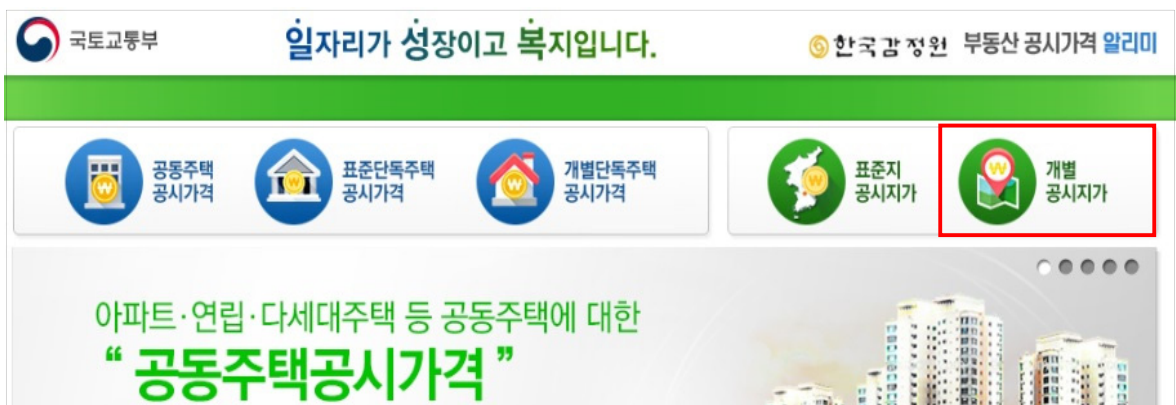
5. 총괄표 작성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이용하여 조회

○ 총괄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신고 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버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

○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경우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 > 개별 공시지가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개별공시지가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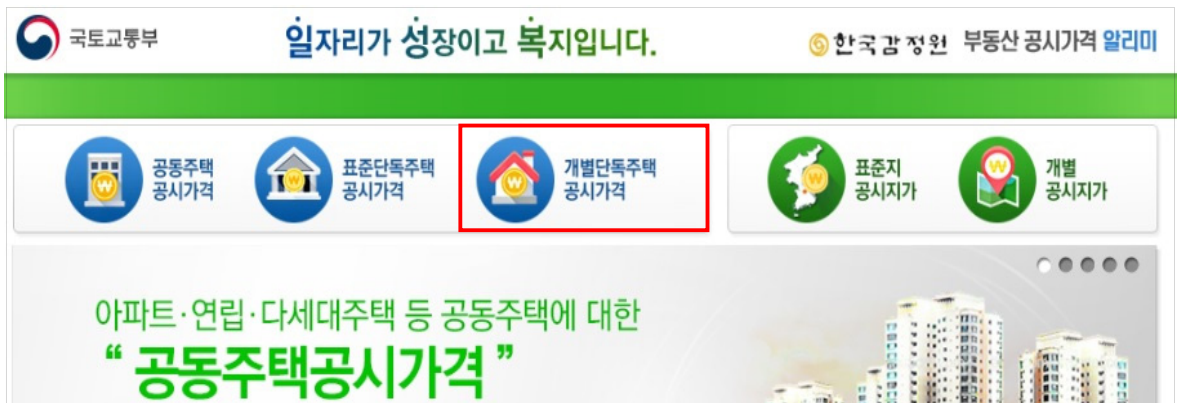
지번입력조회 도로명주소입력조회

조회: 경기도 ▼ 남양주시 ▼ 화도읍 ▼ 목현리 ▼ 산 ▼ 77 - 1 **검색** **인쇄**

가격기준년도	신청대상 토지		확인내용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비고
201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	산 77-1번지	3,700 원	이월 이일	2018/05/31	
201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	산 77-1번지	3,600 원	이월 이일	2017/05/31	
201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	산 77-1번지	3,390 원	이월 이일	2016/05/31	
201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	산 77-1번지	3,290 원	이월 이일	2015/05/29	
201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리	산 77-1번지	3,190 원	이월 이일	2014/05/30	

○ 단독주택의 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경우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개별주택가격 열람

지번입력조회 도로명주소입력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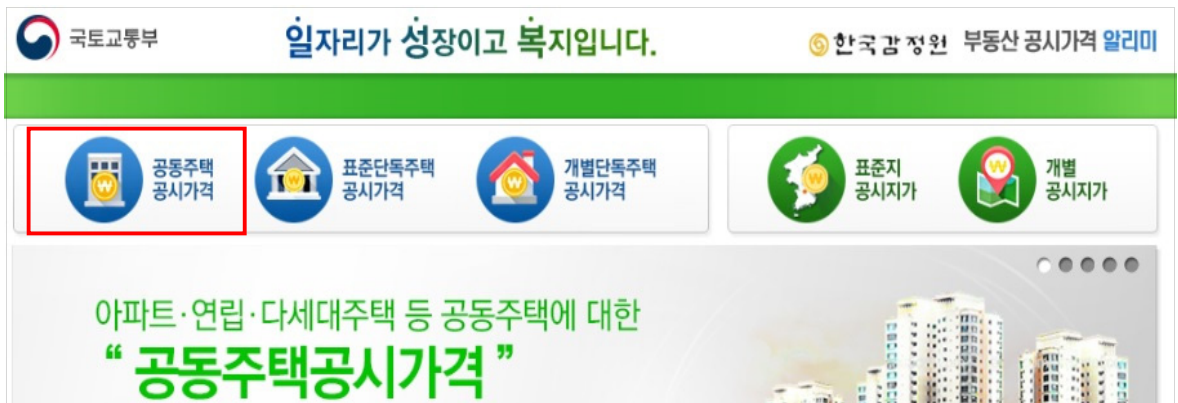
조회: 서울특별시 ▾ 성북구 ▾ 공직동 ▾ 일반 ▾ 12 5

조회기간: 2014년 ▾ 2018년 ▾ 건물번호:

가격기준연도 (기준일)	건물 번호	주택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확인내용 개별주택가격 (원)
			전체	산정	전체	산정	
2018/01/01	1000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로1길 12	122.00	122.00	63.78	63.78	197,000,000
2017/01/01	1000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로1길 12	122.00	122.00	63.78	63.78	184,000,000
2016/01/01	1000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로1길 12	122.00	122.00	63.78	63.78	173,000,000
2015/01/01	1000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로1길 12	122.00	122.00	63.78	63.78	173,000,000

○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는 경우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화면 >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2.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 입력 후 검색하여 공시지가 확인

Search

도로명 검색
지번 검색
공시기준일 검색
도로명 주소란 ?

[별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공시기준일 검색" 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시/도 선택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시/군/구 선택

- 용인수지구
- 용인처인구
- 의왕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평택시
- 포천시
- 하남시
- 화성시

읍/면/동 선택

- 미사동
- 배알미동
- 상사상동
- 상사구동
- 선동
- 신장동
- 장우동
- 천현애동
- 조이동
- 초월동

단지명 입력 지번 입력 569 - 0 검색

단지명

대명강변타운아파트(대명강변타운)

동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호

- 201
- 202
- 301
- 302
- 401
- 402
- 501
- 502
- 601
- 602

열람하기

공통주택공시가격 열람지역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79(하남시 신장동 569)

공시기준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	공동주택가격 (원)
2018.1.1	대명강변타운아파트(대명강변타운)	101	202	84.83	308,000,000
2017.1.1	대명강변타운아파트(대명강변타운)	101	202	84.83	301,000,000
2016.1.1	대명강변타운아파트(대명강변타운)	101	202	84.83	288,000,000

6. 총괄표 작성에서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된 재산항목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친족명 일치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중요약서 신고서제출

○ 성명 불일치 정보가 존재합니다.

▶ 홍길동동(장남) : 16건

위 친족의 성명을 **친족명일치** 선택하여 "친족명 일치"를 진행하세요.

친족명 일치 다음에

작성방법

하십시오.

* 친족명일치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구분	상태	관계	관리자	재산항목	관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1,367,910	0	0	1,367,910	변동사유기재
<input type="checkbox"/>	!	본인	이**	(주)KEB하나은행	저축예금	8	0	0	8	변경
<input type="checkbox"/>	!	장남	홍길동동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보통예금	21	0	0	21	변경

· 정치예금
· 유가증권 금융정보
· 사인간 채권
· 채무 금융정보
· 금 및 백금
· 보석류

○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에 등록된 친족명과 다른 이름으로 신고 된 재산항목이 있을 시 위의 화면처럼 "성명 불일치 정보"팝업창이 나타남

- 예금, 유가증권, 채무 항목에서 붉은색으로 표기됨

- *** 친족명일치** 버튼을 클릭하여 일치처리 후 계속 진행

※ 친족명 불일치된 재산항목이 남아있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친족명불일치 알림

○ 재산신고서에 등록된 성명과 다른 이름으로 기등록된 재산항목이 있습니다.

▶ 예금/보험 : 16건
▶ 채무 : 2건

※ 위의 재산항목 화면에서 "친족명일치"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7. 금융정보가 제공되는 항목(예금, 유가증권, 채무)의 신고 방법은?

정보제공동의자인 경우 **금융정보활용입력**으로 신고하는 방법 또는 직접변동 신고하는 방법으로 재산신고 가능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1. 총괄표의 예금항목에서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클릭

🏠 . 재산신고 . 예금/보험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금융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예금/보험** 일괄신고 가능

1 는 변동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니, 해당 건을 선택하여 변동신고 하십시오.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천원)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2. 금융기관에서 회신 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계좌를 확인 후 아래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계좌

관계	소유자	예탁기관(계좌번호)	예탁종류	종전가액 (천원)	현재가액 (천원)	증가액 (천원)	감소액 (천원)	비고
본인	홍길동	국민은행 (457615-01-333333)	연금보험	0	5,000	5,000	0	
본인	홍길동	국민은행 (457615-01-333333-2)	연금보험	5,500	0	0	5,500	↓
본인	홍길동	신한은행 (110-345-1661313)	울커바암치료	8,000	6,480	0	1,520	
본인	홍길동	우리은행(국내) (1002-135-111111)	우리스마트적금	0	22,100	22,100	0	
본인	홍길동	우리은행(국내) (1002-135-111111-1)	우리스마트적금	10,000	0	0	10,000	↓
배우자	이여왕	NH투자증권 (234-409-135435-2)	CMA	1,000	0	0	1,000	↓
3자	이여왕	국민은행 (412345-01-4444444)	자유적금	0	2,500	2,500	0	
배우자	이여왕	국민은행 (412345-01-4444444-1)	자유적금	2,800	0	0	2,800	↓
배우자	이여왕	국민은행 (431564-02-6134812)	청약저축	2,600	3,500	900	0	
배우자	이여왕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4943512)	암플러스종신보험	26,000	24,000	0	2,000	
부	홍공	국민은행 (453254-01-1478712)	자유적금	9,900	0	0	9,900	↓
부	홍공	농협중앙회 (235-401-165232)	저축	4,800	0	0	4,800	↓
장남	홍익	우리은행(국내) (1002-352-2221415)	저축	6,500	0	0	6,500	↓

- ① ‘현재가액’란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이 표시되며, 현재가액란에 등록 기준일 시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실제 보유금액과 다르다면 직접 ‘현재가액’(유가 증권은 수량, 현재가액)란을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하고 ‘현재가액’란 등을 직접 수정한 후 잘 못 신고한 자료를 발견했더라도 초기화 할 수 없으므로 ‘금융정보 열람’을 참고해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함
- ② ‘종전가액’란이 ‘0’원인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회신 되어 온 계좌임
- ③ 붉은색으로 표시된 계좌는 종전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임
(해약, 계좌불일치, 금융기관회신오류)
 - 자동변동 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현재가액’란이 ‘0’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므로 목록을 확인 한 후, 정상적으로 회신된 계좌가 있다면 ‘0’인 상태로 진행해야 함

👉 직접변동 신고하는 방법

1. **금융정보열람** 클릭하여 제공된 금융정보내역을 출력하고, 총괄표 예금항목을 계좌별로 클릭하여 직접 변동처리

🏠, 재산신고, 예금/보험
심사관 알림사항 작성방법

모든 정보는 "등록기준일인 2019.12.31." 시점으로 입력 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금융정보활용입력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금융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금융정보제공 동의자) **금융정보열람** 클릭하여 확인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예금/보험** 일괄신고 가능

1은 변동신고가 필요
추가 삭제 미리보기 (단위: 천원)

구분

상태

관계

본인

본인

변동재산

권리명세변경(예탁)

관계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금융 정보내역

금융 보유정보에 대한 조회결과 * 성명이 금융기관 등록정보와 다른 경우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예금보유정보
2.증권보유정보

1.예금보유정보(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 등

소유자성명	조회기준일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상품)종류	예금잔액(천원)	대손잔액(천원)	계좌개설일
계				63,580	43,000	
종길*	2019-12-31	국민은행(1124512345612)	국민대충	0	40,000	2009-02-18
종길*	2019-12-31	국민은행(457615-01-333333)	연금보험	5,000	0	2009-02-18
종길*	2019-12-31	신한은행(110-345-1661313)	올커버암치료	6,480	0	2009-05-01
종길*	2019-12-31	신한은행(4512456851231)	신한대충	0	3,000	2009-05-01
종길*	2019-12-31	우리은행(국내)(1002-135-111111)	우리스마트적금	22,100	0	2010-05-03
이여*	2019-12-31	국민은행(412345-01-4444444)	자유적금	2,500	0	2009-02-18
이여*	2019-12-31	국민은행(431564-02-6134812)	철약저축	3,500	0	2009-02-18
이여*	2019-12-31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13-4943512)	임플러스중신보험	24,000	0	2007-10-03

변동사유

7,100

변동사유기재

변경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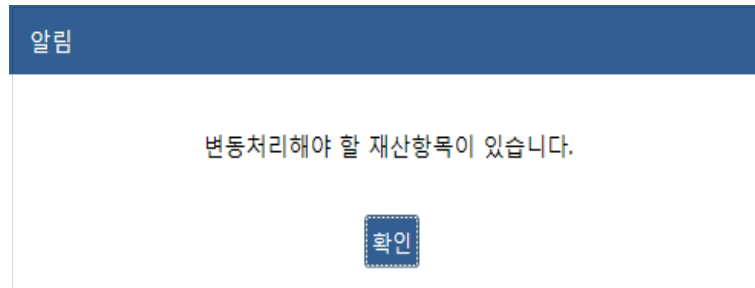
출력 닫기

계좌번호 457615-01-333333-2

해약(* 선택된 예금(보험)계좌를 해약한 경우 체크하십시오.)

前 보유액	現 보유액(필수)	증가액	감소액
5,500(천원) [오백오십만]원	5,500 (천원) [오백오십만]원	0 (천원)	0 (천원)

8. 총괄표에서 다음으로 진행하려는데 변동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은?



- 부동산(토지, 건물)에 ⓘ 표시가 남아있는 경우 처리방법
 -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각 재산항목의 상세화면에서 “가액변동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 **변동사유기재**

 - 금융(예금, 유가증권, 채무)에 ⓘ 표시가 남아있는 경우 처리방법
 - 금융정보활용입력으로 정상 반영 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금융정보활용입력으로 반영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건물임대채무 등 항목이 있다면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각 재산항목의 상세화면에서 현보유액, 변동사유를 정확히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유의사항
- 총괄표에서 ⓘ 표시되는 재산항목은 모두 변동처리 후 다음으로 진행

9. 총괄표 작성 후 “본인 및 친족 주소지의 소유권 및 전세권 미신고 여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처리방법은?

본인 및 친족 주소지의 소유권 및 전세권 미신고 여부 확인

○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지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 되지 않은 경우 표시됨

- 누락한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추가하고, 관사기숙사 친척집 거주, 월세 등일 경우 해당 사실을 친족정보수정의 “관리형태”란에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

10. 총괄표의 재산증감액과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이 상이한 이유는?

총괄표와 변동요약서의 재산증감액 계산 방법이 다름

○ 총괄표 : 가액변동액으로 신고된 재산에 대한 변동금액을 계산

구분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계						747,177	36,000	153,177	630,000	
<input type="checkbox"/>	변동	본인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8번지 두산위브아파트 202동 101호 건물 68.48㎡ 중 68.00㎡	소유권	594,000	36,000	0	630,000	완료 가액변동
<input type="checkbox"/>	변동	배우자	이여왕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01동 101호 건물 0.00㎡ 중 0.00㎡ (건물 총면적 84.84㎡ 감소, 지분면적 84.00㎡ 감소)	소유권	153,177	0	153,177 (250,000)	0	완료 소유권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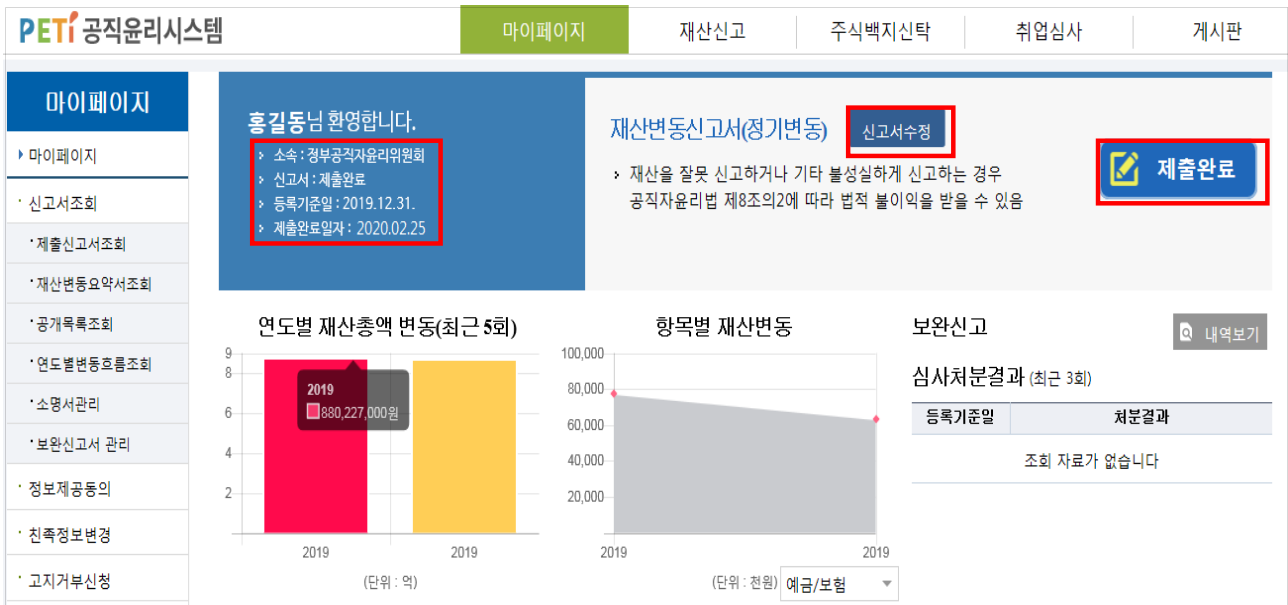
○ 변동요약서 : 실거래가격이 등록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

☞ > 재산신고 > 재산변동 요약서 재산변동 요약서 다시가져오기

구분	재산증가		재산감소	
	금액(천원)	변동사유	금액(천원)	변동사유
01.토지	-		(▽22,100)	토지 증여로 인한 감소
02.건물	36,000	가액변동 증가	(▽250,000)	건물 매도
03.자동차 등	-		(▽5,000)	평가액 감소
04.현금	-		-	
05.예금	30,500	저축, 신규 보험 가입	(▽44,020)	채무 상환으로 인한 감소

	총괄표	변동요약서
증감액	가액기준	실거래가격 기준
재산증감액	현재가액 - 종전가액	
실거래증감액		총재산 증가분 - 총재산 감소분
순재산증감액	순재산 증가분 - 순재산 감소분(가액변동분 제외)	

11.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신고서 수정방법은?



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 제출이 완료된 등록의무자의 경우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제출완료 가 보여지며 "신고서"에 "제출완료"로 표기됨

※ 미제출된 경우 **신고서작성** 이 보여지며,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제출

신고서 수정방법

○ 제출마감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수정** 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반드시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 제출마감일 이후 10일 이내인 경우 **신고서수정** 클릭하여 신고서 수정요청 사유 입력 후 수정요청

※ 소속 등록기관의 수정승인을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하며, 제출마감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신고서 수정 불가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발행일 : 2020년 1월

발행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과

TEL : 044-201-8467

TEL : 044-201-8136

인쇄처 : (주)경성문화사 TEL : 044-868-5591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인사
혁신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